



제433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1
III. 감사 대상기관	1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1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
IV. 감사 실시경과	4
1. 감사반 편성	4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V. 증인 및 참고인 명단	8
1. 기관증인	8
2. 일반증인 및 참고인	12

VI. 주요 감사실시내용 16

1. 국가보훈부	16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
3. 독립기념관	29
4. 88관광개발(주)	31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2
6. 공정거래위원회	40
7. 한국소비자원	64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6
9. 금융위원회	67
10. 금융감독원	89
11. 예금보험공사	108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12
13. 한국주택금융공사	115
14. 신용보증기금	118
15. 한국산업은행	121
16. 중소기업은행	123
17. 서민금융진흥원	124
18. 국민권익위원회	126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1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38

Ⅶ. 시정·처리 요구사항 144

1. 국가보훈부	144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0
3. 독립기념관	151
4. 88관광개발(주)	152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3
6. 공정거래위원회	158
7. 한국소비자원	171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72
9. 금융위원회	173
10. 금융감독원	186
11. 예금보험공사	193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95
13. 한국주택금융공사	197
14. 신용보증기금	199
15. 한국산업은행	200
16. 중소기업은행	201
17. 서민금융진흥원	202
18. 국민권익위원회	203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5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09

I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감사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8일(화)

III 감사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국가기관)	○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호(시·도)	없 음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3호 (공공기관 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부 소관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무조정실 소관 (25)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
	○ 예금보험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소관 (7)
계	44개 기관	

2.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계	1개 기관	

IV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의원보좌직원, 속기사 등으로 한다.

[감사위원 명단*]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국민의힘	윤 한 홍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준 현	간사
		김 남 근	
		김 승 원	
		김 용 만	
		김 현 정	
		민 병 덕	
		박 범 계	
		박 상 혁	
		박 찬 대	
		유 동 수	
		이 강 일	

직 위	교섭단체명	성 명	비 고
위 원	더불어민주당	이 인 영	
		이 정 문	
		허 영	
	국민의힘	강 민 국	간사
		김 상 훈	
		김 재 섭	
		유 영 하	
		이 양 수	
		이 현 승	
		추 경 호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신 장 식	
	비교섭단체 (사회민주당)	한 창 민	

* 위원 명단은 국정감사 실시 시점(2025. 10.)의 소속 정당 기준

[감사보조자 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정명호	
전문위원	2급	이선주	
"	2급	최기도	
행정실장	4급	박민호	
금융정책조사관	3급	이지연	
"	4급	윤동한	
"	4급	이중석	
"	4급	이명자	
"	4급	이중수	
공정거래정책조사관	4급	홍 정	
"	5급	이지연	
"	6급	황명숙	
보훈정책조사관	4급	이종민	
"	5급	한경석	
"	5급	민경욱	
행정관	6급	김유준	
"	6급	송명례	
주무관	6급	염혜윤	
"	6급	손지화	
"	6급	오승희	
속기사	6급	정현석	
"	6급	정채이	
"	7급	김성진	
"	8급	안소은	
정책연구위원	1급상당	이성원	국민의힘
"	4급상당	차가진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이형탁	더불어민주당
"	4급상당	전 원	국민의힘
※ 의원보좌진: 24인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대상기관	장소
10. 13.(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4개)	국회
10. 14.(화)	공정거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 15.(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16.(목)	<현장국감> 국가보훈부 /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	정부세종청사 (세종)
10. 17.(금)	<자료수집 및 정리>	
10. 18.(토)		
10. 19.(일)		
10. 20.(월)	금융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국회
10. 21.(화)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 22.(수)	<자료수집 및 정리>	
10. 23.(목)	<현장국감>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10. 24.(금)	<현장시찰>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
10. 25.(토)		
10. 26.(일)		
10. 27.(월)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	국회
10. 28.(화)	<종합감사 - 비금융> 국가보훈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회

V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328명: 증인 318명, 참고인 10명)

1. 기관증인(총 292명)

○ 기관증인 현황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계
1	국가보훈부	권오을	27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6
3	독립기념관	김형석	4
4	88관광개발(주)	서정천	3
5	국무조정실	윤창렬	57
6	국무총리비서실	민 기	12
7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18
8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6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3
10	금융위원회	이억원	16
11	금융감독원	이찬진	16
12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8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8
14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7
15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7
16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12
17	중소기업은행	김성태	18
18	서민금융진흥원	이재연	7
19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21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8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24개)	(공석) 외 24인	28*
합 계			292

*부설기관장(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장,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2인 포함

○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13.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소통협력관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	공석
10.13.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공석
10.13.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	공석
10.1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석
10.13.	-	국토연구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석
10.14.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석
1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석
10.16.	김오복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부	상
10.16.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국가보훈부	공석
10.16.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국가보훈부	공석
10.16.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국가보훈부	공석
10.16.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국가보훈부	공석
10.1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이사	국가보훈부	공석
10.16.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고충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16.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석
10.20.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공석
10.20.	윤영은	금융위원회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제4차 FATF 총회 참석
10.21.	-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감독원	공석
10.21.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공석
10.2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석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27.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7.	-	금융감독원 부원장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7.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7.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종합감사(금융)	공석
10.28.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이사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권영습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송현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소통협력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5상임심판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신현호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손진욱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종합감사(비금융)	APEC 행사 담당 및 참석
10.28.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이정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참석

일자	성명	직 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유
10.28.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고충처리)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10.28.	-	국토연구원장	종합감사(비금융)	공석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36명: 증인 26명, 참고인 10명)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	증인	김영섭	KT 대표이사	10.14.	개보위 공정위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2	증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10.14.	개보위 공정위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3	증인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10.14.	공정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
4	증인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10.14.	공정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
5	증인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10.14.	개보위 공정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
6	증인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10.14.	개보위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7	증인	김범석	쿠팡 의장	10.14.	공정위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관련 쿠팡 대만사업, 쿠팡inc 주식 보유, 판매 장려금 등 관련,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
8	증인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	10.14.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
9	증인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10.14.	개보위	중국 국가정보법과 중국 플랫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	○
10	증인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	10.14.	공정위	LX하우시스 납품단가 후려치기	○
11	증인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	10.14.	공정위	교촌치킨 가맹점주 갈등 및 중량축소 관련,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조치로 가맹점 재계약 거절	○
12	증인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10.14.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관련	○
13	증인	황성혜	구글 부사장	10.14.	공정위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	○
14	참고인	육성권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	10.14.	공정위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
15	참고인	송명순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10.14.	공정위	SPC 및 비알코리아(주)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	○
16	참고인	김현수	현글라스 대표	10.14.	공정위	LX하우시스 납품단가 후려치기	○
17	참고인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	10.14.	공정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
18	참고인	이의환	홈플러스 전대채 피해자 대책위원장	10.14.	공정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
19	참고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	10.14.	개보위 공정위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연번	구분	성명	직업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20	증인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10.20.	금융위	빚 탕감 관련	○
21	증인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10.20.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미흡 지적(MBK)	○
22	증인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10.21.	금감원	조합 내부 통제	○
23	증인	이정의	한국ESG 기준원 부원장	10.21.	금감원	협약참여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평가 현황 및 문제점 청취	○
24	증인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
25	증인	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영위	×
26	증인	김형산	더스윙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가맹사업법 회피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
27	증인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	○
28	증인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상조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사기 계약	○
29	증인	채정식	씨엠애플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대리점운전기사 수수료	○
30	증인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공연·경기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
31	증인	장유정	로보락 코리아 매니저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개인정보보호 논란	○
32	증인	김범석	쿠팡 의장	10.28.	종합감사 (비금융)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관련 쿠팡 대만사업, 쿠팡inc 주식 보유, 판매 장려금 등 관련,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
33	참고인	김홍광	NK지식연대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34	참고인	안부현	더스윙 대리점주	10.28.	종합감사 (비금융)	가맹사업법 회피 및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
35	참고인	성낙훈	명륜진사갈비 양산덕계점장	10.28.	종합감사 (비금융)	명륜당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피해자	×
36	참고인	이창배	대리운전 노조위원장	10.28.	종합감사 (비금융)	대리운전기사 수수료 등 청취	○

○ 일반증인 불출석 현황(총 4명)

연번	성명	직업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불출석사유	사유서 제출
1	김범석	쿠팡 의장	10.14.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거주 및 출장	○
2	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해외출장	○
3	김형산	더스윙 대표	10.28.	종합감사 (비금융)	해외출장	○
4	김범석	쿠팡 의장	10.28.	종합감사 (비금융)	해외 거주 및 출장	○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 요구일	대상기관	출석			불출석		
		일반증인	참고인	계	일반증인	참고인	계
10.13.	국무조정실 등	-	-	0	-	-	0
10.14.	공정거래위원회 등	12	5	17	1	1	2
10.16.	국가보훈부 등	-	-	0	-	-	0
10.20.	금융위원회 등	2	-	2	-	-	0
10.21.	금융감독원 등	2	-	2	-	-	0
10.2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	0	-	-	0
10.27.	종합감사(금융)	-	-	0	-	-	0
10.28.	종합감사(비금융)	6	3	9	3	1	4
계		22	8	30	4	2	6

○ 일반증인 철회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출석요구일	대상기관	비고
1	장보환	(주)하남에프앤비 대표이사	10.14.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2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10.14.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의결
3	오경석	업비트 대표	10.20.	금융위원회	위임의결
4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10.21.	금융감독원	위임의결
5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10.21.	금융감독원	위임의결
6	최태원	SK그룹 회장	10.28.	종합감사(비금융)	위임의결
7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10.28.	종합감사(비금융)	위임의결
8	최철홍	보람그룹 대표	10.28.	종합감사(비금융)	의결
9	한혜진	템플러스 대표	10.28.	종합감사(비금융)	의결
10	김서영	로보락 한국지사 대표	10.28.	종합감사(비금융)	의결

VI 주요 감사실시내용

1.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 및 예우 관련

-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분석 사업은 8년간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신규 포상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부진하고, 중국 국적의 연구자에게 집중하여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외 사적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가 부실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이 부재함을 지적
- 최봉설 의사 묘비 오기 방치, 강연상 지사 묘소 방치, 박노순 지사 유해 봉환 지연 등 독립운동 국외 사적지 관리 미흡 지적
- 국가보훈부가 총 23억을 지원한 뉴욕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뉴욕한인교회에서 한미디아스포라재단으로 무단 변경되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변경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외 사적지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
-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를 위하여 보훈영사 파견, 한·중 협의체 구성, 한·중 독립운동 사적지 공동보존 프로젝트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함을 지적
-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이동녕 선생 고가 터, 토교 한인촌 등 국외 사적지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학생·청년들이 임시정부 이동 루트를 경험할 수 있는 국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필요
- ‘삼청장’이 국가 사적으로 복원되지 못하고, 대통령 안가로서 폐쇄적으로 관

리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 국군의 날이 광복군 창설일(9. 17.)로 변경·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광복 80주년 기념 ‘보훈돌’ 사업은 고연령인 보훈대상자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고, 사업의 초기 기획안이 부재하였으며, 정산 및 수익관리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
-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원 중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미전수율이 59%에 이르는 등 독립유공자로 포상되고도 그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관련하여, 심사위원 및 심의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할 필요
- 미성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미포상 사례가 다수 있는데, 미성년 독립운동가들은 그 연령대를 고려한 심사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
- 이상룡 선생의 서훈 등급이 공적에 비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조봉암 선생에 대한 2011년 대법원 무죄 판결,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립유공자 인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조봉암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 것은 역사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
- 조선 최초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에 대하여, 독립운동 후방 지원 활동에 대한 부분만으로 서훈이 수여되었으나, 최근 윤희순 의사가 전투에도 참여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서훈 승격이 필요함을 지적

-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이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따라 변경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훈정책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임시정부와 관련된 연구 사업이 부족하였음을 지적
- 정윤희 역사공원 조성, 동상 복원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에 해당 인물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추가로 권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가 차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광복80주년을 맞이하여 1945년 11월 23일 미완의 임시정부 귀환을 공식적으로 완료하는 기념행사 또는 역사적 선언을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
- 친일재산 환수 등을 통하여 순애기금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청소년 국외역사문화 탐방사업을 증액하고, 기념사업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사업의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
- 문화예술을 통하여 보훈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훈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보상·등록 관련

-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루는 '독립', '호국', '민주' 세 가치 중 '민주' 가치가 홀대받는 현실 지적
-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관련하여, 노동능력 상실 등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손상 등 제약 정도는 상이등급 심사에 해당함에도, 이를 요건 심사 단계에서

적용하여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의 등록 심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가 전역 후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기각한 것은 지연성 PTSD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
- 현행 PTSD 기준(외상을 겪고, 그 사실로 인하여 PTSD 진단을 받은 경우)은 지나치게 협소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에게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재심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함을 지적
-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순직이나 공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고, 유가족이나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 군 복무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당 지뢰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5·18관련자에서 제외된 택시 운전자 김사복, 5·18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힌츠페터 등과 같이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 대내외에 알린 기여가 큰 자도 5·18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중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에 대하여 뉘우침 심사를 통하여 재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 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패소한 이후에도 기계적인 상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패소비용의 발생, 보훈대상자 예우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

- 5·18유공자 3인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2021년도에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공적 조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그의 배우자 사망 시 보상금 승계가 25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가능한데, 이는 다른 유공자의 보상금 승계 범위에 비하여 협소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지적
-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서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기준 요건으로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도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지적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건수 및 규모, 부정수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급 사전 차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환수 실적 또한 저조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보훈의료 관련

- 지방보훈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서울 중앙보훈병원보다 현격히 낮고, 세부전공별로 전공의가 배치되지 않은 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역별 의료지원 격차가 심각함을 지적
- 지방보훈병원 전문의 부재로 핵심 진료가 장기간 휴진 사태를 겪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진료 공백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지적
- 보훈 의료지원 부실에 따른 이용자들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지적

- 보훈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한의사가 없는 보훈병원이 있고, 보훈병원 전체 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국가보훈부가 한의과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 특수임무공로자 등 비상이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한의원을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인천보훈병원에서 5년 연속 간호직 결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의약품 계약과 관련하여, 151건 중 41건이 지연되는 등 의약품 계약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보훈병원별 보훈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경기 남부권에 보훈병원을 신규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강원지역 내 보훈병원은 전무하고, 위탁병원은 대부분 의원급이어서, 강원지역 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보훈의료지원이 부족함을 지적
- 보훈병원 내 구내 식당, 자판기 등의 수익시설을 상조회, 노조와 수익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상조회, 노조가 가져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진료비 거짓 청구, 무자격 의료행위, 적정성 평가 연속 하위 10% 등으로 위탁병원 지정이 해지된 의료기관들이 위탁병원으로 재지정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수도권 위탁병원은 301개소인 데 반해, 광주·전남권 위탁병원은 108개소이며, 특히 광주는 14개소에 불과하는 등 지역 간 위탁병원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 지역간 의료지원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先進료 後 청구’ 방식의 보훈 의료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안과, 치과 등 특수진료과 위탁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연장 거부(계약해지) 사유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부 지침(진료비 평균단가 20% 초과)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

○ 보훈복지 관련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최근 5년간 전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조차 보훈특별고용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대부지원 제도 중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300만원의 한도 및 신청 후 대기 기간 등은 ‘시급성’ 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대부지원을 받은 보훈대상자의 채무도 일정 요건 하에 탕감 도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보훈대상자 고독사 발생에 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고독사 위험군 관리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는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에 국가보훈부가 소홀함을 지적
- 국가보훈부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은 고독사 대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선별하였고, 시범사업의 내용은 예방적 측면보다 사후적 확인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가 3,300명인데 반해, 보보안심콜 사업은 9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려로봇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은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에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이동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임을 지적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구직급여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
- 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사업의 대상자 중 15%~17%가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복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미제정, 우선주차구역 설치 저조 지자체 등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도 도입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민간 시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발적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함을 지적
-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훈련 환경 지적

○ 국립묘지 관련

- 국립묘지에서 구입하는 조화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안장·이장 업무가 크게 증가하는 기간(윤달 등)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초과근무를 하게 됨에도, 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등의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
-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안장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서를 대상자의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구체적으

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립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을 지적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된 안장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심의 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2021년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결로·물고임 문제가 발생하여 2022년 국립묘지 관리·운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2025년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등에서 여전히 물고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대책임을 지적
- 미혼인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는 부모와 합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생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비 국립묘지별 안장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자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명예퇴직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경찰, 소방공무원 외 다른 유형의 제복근무자도 장기 재직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특수임무공로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일부 국립호국원(제주·임실·괴산호국원 등)에서 공무원 근로자가 회계업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어, 급여 지급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증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충남은 도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해당 지역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

○ 보훈단체 관련

- 4·19기념도서관이 가압류된 사실을 국가보훈부가 뒤늦게 파악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하여 4·19혁명 관련 공법단체에서 복지심사위원회 심사 및 회계감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4·19기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법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을 지적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단체가 운영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단체의 사업과 운영이 전몰군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 월남전참전자회의 대의원 제도는 금권선거 문제와 실효성 미약 등으로 폐지 요구가 있음을 지적
- '대의원 제도'는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보훈단체가 전체 회원이 아닌 '대의원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감사에 독립기념관 관장의 근태 문제, 특정 종교 편향 문제, 업무추진비 사용, 역사 인식 문제, 부적절한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확인된 사실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
-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편향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심각한 ‘함량 미달’이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국가보훈부 장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8명 중 4명의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한 국가보훈부 차관의 잘못된 발언을 지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보훈부의 행정시스템 복구율(23.1%)이 전체 복구율(45.6%) 대비 저조하므로, 보훈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 등 관련 보훈 업무가 일시적으로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
- 국가보훈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과학기술자 등 국위 선양 인사를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여 예우하려는 등 국가보훈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보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라는 국가보훈부 본연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부장관의 취임 이후 세종청사 근무 일수(8일) 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보훈 업무는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필요
- 보훈기금 운용 수익률이 3%대에 머무르고 있어, 보훈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의 재원 다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하여 검토되고 있는 88골프장 매각 절차를 관련 용역 결과 및 매각가 기준 연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보훈기금 재원을 마련할 필요
-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

- 88관광개발에 퇴역 군인이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
- 「보훈기금법」상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부장관이 사단법인의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취임 축하연을 여는 것은 겸직 신고 누락 및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부 법률자문 계약 중 자문변호사 동의 없이는 자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다른 부처에는 없는 계약 내용으로 부적절함을 지적
- 국가보훈부의 보조사업자인 재단의 행사 참석자 및 수상자 선정이 부적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가 보조금 교부기관으로서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
- 일본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용어를 ‘대일항쟁기’ 등의 용어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문서에 ‘일제강점기’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 국가보훈부가 롯데장학재단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탐방 사업의 주관을 광복회에서 흥사단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보훈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서울 중앙보훈병원보다 현격히 낮고, 세부 전공별로 전공의가 배치되지 않은 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거주지역별 의료지원 격차가 심각함을 지적
- 지방보훈병원 전문의 부재로 핵심 진료가 장기간 휴진 사태를 겪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진료 공백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지적
- 보훈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한의사가 없는 보훈병원이 있고, 보훈병원 전체 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
- 인천보훈병원에서 5년 연속 간호직 결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보훈병원 내 구내 식당, 자판기 등의 수익시설을 상조회, 노조와 수익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상조회, 노조가 가져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공단 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성희롱, 음주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6개 보훈병원 의료장비 중 40% 이상이 회계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등 보훈병원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함을 지적

3.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관장의 역사 인식과 행보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서 독립기념관이 제안한 사업이 배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기념관 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의 잦은 지각, 조기 퇴근 등 근태 문제, 친일적 역사 인식 문제, 특정 종교 편향 문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금전 거래 관계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 등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이 특정 단체 행사에 독립기념관 내 장소를 무상 사용케 한 행위는 독립기념관 내규 등에 따른 대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임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이 수장고를 특정인들에게 개방하고 종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한 것은 자신의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임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의 관용차 운행일지가 관장의 출장 기록, 일반적인 업무 시간과 불일치하고 있음을 지적
- 독립기념관 유아놀이방, 평화누리 전시관 등 시설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개월 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이 정부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
- 국정감사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독립기념관 관장을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필요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작업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추진률이 부족함을 지적
- 독립기념관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 안전환경부장이 공사업자와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독립기념관 관장 및 별정직 직원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을 기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4. 88관광개발(주)

- 88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예약 우선권을 원들에게만 부여하고, 유공자 이용요금이 군 시설에 비하여 높으며, 우대 요금 혜택 대상에서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연 평균 이용률이 약 2.5%에 불과함을 지적
- 88관광개발에 퇴역 군인이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직 운영 관련

-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파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
-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테러방지 법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줄이고 국무총리실의 권한을 늘리는 한편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다른 부처에 비해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일자, 장소 등 세부항목을 표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의 세종시지원단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폐합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 제기
- ODA평가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ODA통합정보포털 고도화를 통해 사업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ODA 관련 비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ODA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조세심판의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과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제도, 우선처리제도, 전자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부패예방추진단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집행실적 통계 관리가 미진하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이 불법 계엄과 관련된 사항을 자체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공직복무관리관실 점검 결과의 70% 이상이 주의·경고이므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
-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실시하는 공직기강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지적
- 지속가능발전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부처별,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정운영 관련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에 사건처리 지연, 경찰 수사 자체 종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찰개혁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정부위원회 관련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및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사건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공공기관들의 헐값 자산 매각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임에도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기 중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지만 소방관리시설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고, 화재 후 국무조정실의 초기 대응에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재의 반기업 정책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정 운영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보좌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명령·권고 불수용 행정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
-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와 관련해, 참사 현장 출동 공무원의 트라우마를 고려해야 하며,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 사이버안보체계 관련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하므로, 국무조정실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앞장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에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와 산업통상부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
- 110콜센터의 소속, 콜센터 상담사의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의뢰 필요성도 제기
- 국정감사에서 해방과 광복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통일연구원장 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공공부문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이 지난 만큼, 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사회 관련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공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
-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 장기요양보험법 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환수 등 관련 우려 제기
- 자동차 보험금 과대 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한방병원들의 상급병실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실손보험 전산화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정부의 특혜성 조치(법무부 불법체류 동포 특별합법화, 전반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인데 유독 중국인 건강보험만 한때 1,000억 이상의 적자 등)가 특정 국적에 편중되면 향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
- 인종, 종교, 이주민에 대한 차별·혐오 행위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국무조정실이 여객기참사 후속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펌프를 전국적으로 늘리고 공동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
- 우리 국민 캄보디아 납치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한다는 지적
- 부처별로 각각 시행 중인 명절 할인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통합 실시할 필요성 제기
- 이공계의 연구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강화 예산, 유관기관 협의 예산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
-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여러 부처가 제각기 맡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 체류자격을 악용한 고의적인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

○ 경제 및 부동산 관련

-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하고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 온라인 압표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를 통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 제기
-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 수단 등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가 되어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FA-50 방산수출 관련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화 지연이 발생되고 폴란드·말레이시아·필리핀 사업 연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
-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더스윙' 기업이 범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
- 새마을금고 감독권의 금융위원회 이관 여부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향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구글의 고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
-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내부거래 등 매출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전세사기 대응은 다양한 부처와 관련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
- 중소형 조선사들이 수출용 선박을 수주할 때 RG 발급이 제한돼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 규제 관련

-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강화와 신설만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폐지도 심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규제의 폐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
-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 유사한 성격의 기구임에도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을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규제개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지역 관련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기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거시적 관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국무조정실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군소읍 피해 보상 기준이 정비되었음에도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할 사업이므로,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추진 TF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에도 군공항 이전 관련 국가사업추진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중심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재추진 검토 등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 기울일 필요
- 평택 주한미군 관련 법률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해당 법률의 상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동남권 '투자은행'을 신설하는 방식이 '투자공사' 방식보다 지역경제 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
- 부산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가 글로벌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육성 등의 측면에서 우려 제기
-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 산하 연구기관 관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관련 알박기 인사 문제 지적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제연구원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

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관련

-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방관함으로 인해 시장 혼탁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발굴 및 조정, 검토할 필요
- 배달플랫폼 상생안과 같은 자율규제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수수료와 배달비를 상승시키며 플랫폼의 힘만 키워주는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와 배달라이더가 협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추진할 필요
- 30일이 넘어가는 정산주기로 인하여 선정산 대출서비스 전문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관련 입법을 통하여 정산주기 단축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배달앱 관련,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공공 배달앱 활성화 등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셀러월렛을 통해 빠른 정산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고,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일 단축, 단체협상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등 입법 추진 필요
- 쿠팡의 자사 상품 우선 노출,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독과점 및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

- 통신사들이 할인티켓 판매과정에서 할인비용을 배급사 등에 전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아사히 카세이 사건에 대하여 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와 2) 현재 조사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
- 설탕, 밀가루 등 가공식품 원재료 분야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 조사 필요
- 금융권 담합조사에 대한 제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감소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고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DAXA를 통해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행위에 대한 담합 여부 조사 필요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업체 간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독과점기업에 대한 강제분할, 식료품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등 현행법상 불가능한 명령이나 집행 사례가 전무한 정책 등에 대해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
-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배달앱 사건과 관련하여 배달앱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사건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의결의 신청부터 시정방안을 내는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배달의민족이 할인행사(푸드페스타)에 입점업체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 착취에 해당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발표 이후에도 예고 없이 거리기준이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

- 쿠팡이츠는 끼워팔기와 무료배달로, 배달의민족은 광고, 가격 조작, 출혈 할인 강요 등으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배달의민족’의 라이더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으로 인해 점주,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우려되는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로드러너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에 로열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
- 쿠팡의 끼워팔기 관련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스포츠패스 관련 끼워팔기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대리운전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점검할 필요
-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콜화물, 택송 등 업종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대한제분과 영동식품간 곰포 상품권 분쟁 관련, 양사간 계약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필요
- 구글이 국내 5개 게임사에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MS가 윈도우 OS에 코파일럿 키를 기본탑재하거나 M365에 코파일럿 기능을 추가하면서 가격을 기습 인상한 행위 관련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필요
- CJ프레시웨이가 기부금을 주는 조건으로 식자재 납품을 하고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기부금을 회수한 사례와 같은 리베이트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국고채 전문딜러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 쿠팡의 아이템위너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 여부, ‘거래기회 제한’ 또는 ‘시장 접근성 불균형’에 해당 여부 질의
- 중국셀러들에 의한 한국셀러의 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 무단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실태조사,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검토,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 등 검토 필요
-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CP 제도의 기업 참여도를 높이고, CP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배달의민족 ‘한그릇배달’ 프로모션에 대해 소비자 기만 가능성, 입점업주의 역마진, 배달의민족의 가격 지배력, 배달플랫폼 종속화 지적
- 배달의민족의 변경된 손실보상정책에 대해 업주 정산 구조의 불합리성, 손실 보상정책의 법적 부당성 지적
- 플랫폼과 점주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하여 점주가 불리한 구조이므로 배달의민족의 우리가게클릭 상품이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점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배달의민족의 우리가게클릭 자동입찰제와 같이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에 대한 조사 필요
-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한 광고비 구조 지적
- 현행법은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아닌 경쟁제한적 효

과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

- 우아한형제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하여 딜리버리히어로가 현금수익과 주식가치 상승의 이중 이익을 얻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조사 필요
- 배달의민족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필요
- 구글의 불공정 담합, 인앱결제 방지법 무력화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 필요

○ 기업결합 및 규제개선 관련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행감독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항공시장의 공정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민간항공사의 재량에 맡겨놓기 보다는 공정성 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한수원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PQ(입찰심사)기준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수행실적의 평가 기준에 특혜가 있는지, 또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필요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유사용역실적 제한으로 3개사 외에 입찰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기준에 상수도점검정비 실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한국고속도로공사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터널운영관리용역 입찰에 특정 5개 업체가 57%, 46%를 수주하고 있으므로, 담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경쟁사 간의 자금 거래로 상표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장지배력 이전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네파의 상표권이 K2로 이전 시 기업결합심사 또는 경쟁제한 우려 거래로 검토할 필요

○ 하도급거래 관련

- 대한제분 관련,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필요
- 대한제분 관련, 자회사 보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인지 및 조사 여부 질의
- 기술탈취 등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해외수주사업 관련 국내기업 간 하도급계약에서 외국 중재 또는 재판관할 조항이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집중 점검할 필요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탈취 등 법 위반의 고의성 인정 시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원사업자가 다른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질의
- 현대건설의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금 지급, 하도급법 위반 및 초과 공사비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필요
- 납품단가 연동제 홍보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면교부 의무

를 회피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연동제 포기를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기술유평행위 등의 입증을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하도급분야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 전면 확대 등 필요
- 건설현장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비율이 낮고 직접지급 합의로 지급보증이 미발급되는 사례가 높으므로, 모든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필요
- CA이엔씨(주)가 ‘고양철문 복합물류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당감액 행위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조치 필요
-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상대 서면미발급(계약서 부존재, 카톡으로 위탁) 등 하도급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원청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
-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탈취 및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조사대상 기한 제한을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또는 특정 불법행위(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악의적 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
- 추석을 앞두고 운영한 하도급대금 신속 지급 센터의 성과 및 지역별 편차, 미지급 업체들에 대한 후속 대책 질의

- 팀프레시 운송료 미지급 건에 대한 구제책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반복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필요

○ 유통거래(가맹·유통·대리점) 관련

-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의 특약 매입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마트들처럼 특약 매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
-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시 정액수수료를 적용하여 손실을 떠넘기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해 정률수수료 도입을 촉진시킬 필요
- (주)명륜당, (주)핵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알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 가맹본부의 대출 알선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실태조사 계획 등 질의
- 명륜당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대부업과 관련한 내용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관련한 과거 지적사항 등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
- 더본코리아 관련, 공정위가 브랜드 난립을 막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실질적인 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
- 굿네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필요
-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납품업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납품업체 규모, 품목 별로 대금지급 상황을 파악하는 등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니터링할 필요

- 쿠팡의 올셀렉션, 다이نام프라이싱 정책으로 인한 문제 파악 필요
-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개편함과 동시에 그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공개서 간 비교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가 가맹본부에 맡겨져 있어 동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동의 절차를 실질화·공정화·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포인트 적립, 일정 횟수 이용 시 1회 무료 등의 판촉 행사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사전동의 또는 별도계약 여부 확인 필요
- 점포환경개선 강요, 감리비 과다 수취 등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규정의 한계 지적
-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하여 관련 불공정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
-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가맹본부의 경쟁력 악화, 가맹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가맹분야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재계약조건·영업시간·차액가맹금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
-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건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점주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므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할 필요
- 가맹본부들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맹점주 대상으로 가맹계약 10년 초과 사유로 계약 해지를 당연하게 요구받고 있는지 현황 파악 필요

-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갱신 주기를 개선할 필요
- 저가 커피 브랜드의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으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커피 가맹점 간 거리제한을 포함하는 자율규약 등을 업계에 적극 권장할 필요
-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납품받는 물품의 원가조차 모르고, 가맹본부는 그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내역과 차액 가맹금 의무 공개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
-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을 로열티 모델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액가맹금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적극적 조치 필요
- 가맹지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해 그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유통 분야 정산주기가 빠르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납품대금 정산 주기 합리화는 타당하나, 정산주기 단축은 메이저 유통업체의 독점 강화 및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매입 거래의 정산주기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아쿠쉬네트 코리아가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
- 비알코리아(주)의 판촉행사, 해피포인트, 인테리어 강제에 대한 조사 필요
- 아디다스의 어카운트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필요

- 교촌에프앤비의 원재료 공급 차질 및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갱신거절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
-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더스윙이 가맹본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영업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속히 조사할 필요

○ 기업집단 관련

- 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
- AI·반도체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 및 GP 보유 허용, 증손회사 지분규제 완화,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2014년 1월 순환출자 금지 제도 도입 이전에 형성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 검토 필요
-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의 독립 지배회사 등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진 현황 질의
- 동일인 관련자 지정제도의 개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해명절차의 명확화 등 실무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벤처투자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공동운용(Co-GP) 허용, 외부출자 한도 상향, 해외투자 비중 한도 상향 등의 규제 완화 필요

-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필요
- 효성이 IMS모빌리티에 대해 투자한 것이 공정위 최종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필요
- T2PE와 흥국리츠운용 지분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게 한 행위의 사업 기회 제공 해당 여부 질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가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필요
- '20~'24년 1,600억원에 달하는 대한제분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 여부 질의
- 5조 미만 중견기업(혹은 비상장회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사업기회 제공행위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
- 서희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필요
- KT IPTV 광고 무상 제공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문제 지적
- 기업집단 SK의 총수 최태원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SKT의 SK C&C에 대한 허위 일감몰아주기, SK스퀘어의 자사주 매입·소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필요
- 상표권 사용료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굽네치킨의 자녀회사 일감몰아주기 사건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 필요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소유의 대부업체를 통하여

점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

- 천안기업이 유진기업 보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계열사들에 해당 건물을 임대차한 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빗썸의 대주주·지배구조,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추가 공시 항목 질의 (강민국 의원, 서면질의, 10월 28일)
- 기업집단 사조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발생하였는지 검토 필요

○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임을 광고하면서,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필요
- 제품의 성능을 홍보하는 표시·광고 관련하여 중국기업에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중국 기업 TCL이 퀀텀닷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프리미엄 QLED TV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
- 결혼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원인, 조치 내역 등 현황 질의
-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여 대응 필요
- 여행사의 국외여행 상품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 수수료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실효성 점검 필요
-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분야 관련하여 공정위 제재가 사업자 행위 중심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실태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플랫폼·숙박업체간 계약이 얽힌 구조에서 현행 법령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형 거래 실태를 반영한 감독 기준 제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아고다 등 글로벌 여행플랫폼 상품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 필요
- 일부 대형 연예기획사가 케이팝 공연티켓의 소유자가 예매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필요
- 추모공원 등 봉안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데,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 중고거래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도 관심이 필요
-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쿠팡파트너스의 납치광고 관련 실태 점검 필요
- 다크패턴의 개념을 ‘숨겨서 혹은 속이거나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하는 행태’라고 할 때 쿠팡의 납치광고도 다크패턴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다크패턴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면 법을 개선할 필요
- OTT 구독 관련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 실태조사, 중도해지 환불 기준 및 표준약관 마련 필요
- OTT 시장의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OTT 이용자 약관 검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한 B2B 약관에 대해 국내 약관법 적용이 어려워

로 약관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질의

- 식당테크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심화되지 않도록 표준약관 제정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조업체 총 선수금이 10조원을 초과하나 현행법은 상조업체 선수금의 50%만 규제하고 있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바, 금융당국의 지원을 통해 공정위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6개사 중 70개사는 선수금을 통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선수금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 대상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건전성 저해 행위를 규제할 필요
-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보람그룹 의결권 편중 해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미이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교촌치킨의 중량감축 및 원육 변경 문제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중요 원재료 고지 의무 재도입, 프랜차이즈·외식업까지 고지 의무 확대 등 현행 슈링크플레이션 규율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조합 해산과정에서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생협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필요성 검토 필요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지배적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함에도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거대 생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오너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퇴사

등으로 노동자들이 주식매도 의사를 밝히면 매수에 소극적이며 일부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할 것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타 조합 상조회 운영에 관여하며 공제사업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할 것
- 헬스장, 필라테스, 미용실 등 여러 업종에서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불금 먹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헬스장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대책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역류방지쿠션이 영유아의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아용 섬유제품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기준을 개정할 필요
- 결혼식장을 계약할 때 신랑 측과 신부 측 각각에 대해 최소보증인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각 보증 관행에 대한 조사 필요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에도 위약금 부과 필요하므로 관련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쿠팡 추석페스타 최대 50%할인은 상품가격이 공식 홈페이지보다 2배 부풀려지는 등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하여 표시한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바 공정위에서 조사할 필요
-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일부 구독서비스 업체의 경우 서비스 가입과 갱신은 쉽게 지원하는 반면, 해지는 매우 어렵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필요
- 공유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자동결제, 취소·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문제, 운송업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되어 명확한 표준약관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조치와 규제 필요
- 대형마트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실시 직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엄중하게 다룰 필요

- 대한항공이 개조한 좌석의 규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항공 소비자의 권리 축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티켓베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압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근거법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필요
- 국내 가전제품에 비해 중국 가전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재가 느슨하여 시장질서가 불균형함을 지적

○ 기타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비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재원을 활용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
- 공정위 퇴직 후 쿠팡 및 계열사로의 이동은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어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유착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위의 자구 방안 마련 필요
- 공정위 차원의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직-퇴직자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내부감찰팀을 강화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존속시킬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굵네치킨 조사가 부당한 외압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인지를 여부를 조사할 필요

-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의 분쟁 과정에서 보인 권력형 대응, 언론 압박 행태를 불공정거래 조사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
- AI 알고리즘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내 데이터 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등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시장분석 전담팀 신설 방안 검토
- 플랫폼 갑질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증원에 대한 검토 필요
-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경받은 후에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의의결을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공정위가 사건을 동의의결 절차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방안 필요
-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바, 공정위가 실적 쌓기를 위한 제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경우 과잉규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우려
- 과징금 부과 전에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한 과징금을 제시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거쳐 철저히 대응할 필요
-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별 처리기준·심사 프로세스의 구조개편 병행하는 등 조사·심의 효율화 필요
- 건설노조 관련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1건에 대한 상고취하 검토 상황 및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3건 패소 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 질의

- OTT 구독 중도해지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도기준 마련되면 재심의 필요하다는 지적
- 공정거래종합지원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공정위 입장 질의
- MBK의 회장인 김병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 극단적인 처방을 검토할 필요
-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저작권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마이리얼트립’이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및 공정위의 직권 조사 검토 필요
- 금융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 서비스 내용, 약관상 수수료 산정 방식, 온투업자 민원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
- SK렌터카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이중 매매 조사 필요
-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공지로 수락시간,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15명 중 8명이 공정위·소비자원 출신 낙하산임을 지적
-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조를 탄압한 일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

○ 증인 김범석

- 한그릇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을 지적
- '배달의민족'이 시범 도입한 라이더 배차 시스템인 '로드러너'는 점주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라이더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도입을 중지할 필요
- 방문 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한 철회 필요
-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라이더들에게 공지한 배차 수락시간, 수락을 산정 기준 재검토 필요

○ 증인 김명규

- 1인분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을 지적

○ 증인 김병주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산대금 미지급분의 즉각 지급, 이자분 보전, 사채출연, 유동성 보강, 입점업체 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회생계획, 사채 출연 등 노동자, 입점업체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
- MBK나 김병주 회장이 대기업 납품대금에 대하여 보증하고, 현재 납품대금 선납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은 홈플러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가 전 M&A를 위하여 인수 희망자의 조건을 맞춰주는 노력 필요

- M&A가 실패하여 파산 또는 청산으로 가는 경우 사과문에서 얘기한 2,00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증여할 의사 여부 질의
- MBK가 롯데카드를 이용한 기업구매카드 신용공여 확대, 자산 유동화 전단 채 사용하여 홈플러스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임을 지적
-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된다면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 질의
- MBK의 사회적 책임 위원회의 역할 질의
- 홈플러스와 관련된 투자처 관리, 부동산 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계획 등에 관여 여부 질의
- MBK가 네파를 인수한 이후 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부담을 전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투자금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 지적
- MBK가 기업회생을 엑시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지적
- 홈플러스가 속한 펀드에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재출자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적
- MBK파트너스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회수금액, 홈플러스 인수 관련 MBK 파트너스의 운용보수·성과보수 등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

○ 증인 김광일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산대금 미지급분의 즉각 지급, 이자분 보전, 사채출연, 유동성 보강, 입점업체 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인가 전 M&A의 시한에 임박하여 공개입찰로 전하는 등 청산절차로 가려던

계획이 아닌지 지적

- 유동화 전단채 투자자들의 채권이 상거래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변제 대상 인지 여부 질의
- 유동성 문제가 있었음에도 전단채를 발행할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임을 지적
-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MBK 사과문의 추가 증여분 2,000억 원을 사용하거나 지급보증하는 방안 검토 필요
- MBK가 LBO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손실을 사회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LBO방식에 대한 점검 및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 검토 필요
- 국민연금 투자금의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관하여 질의
-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인수하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증인 노진서

- LX하우시스의 서면계약서 미발급, 단가 관련 협의 개시 미이행, 각종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위반 사례 지적

○ 증인 송종화

- 교촌치킨 순살치킨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대로이나 전체적인 중량과 비싼 부위의 중량이 줄어든 사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을 지적
- 교촌에프앤비의 원재료 공급 차질 및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갱신거절 문제와 관련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증인 황성혜

- 구글이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제3자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30%로 유지하여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형해화시키고 있음을 지적
- 구글의 불공정 담합, 인앱결제 방지법 무력화에 대한 정책 변경 필요

○ 증인 조주연

- 홈플러스 미지급 물품대금의 규모에 대한 질의
-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증인 권범순

- 티켓베이가 압표 신고 기능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압표 거래를 방치하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압표 거래를 견제하고 제재할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필요

○ 증인 채정식

- 콜마너가 동일한 앱 3개 운영, 유료 배차권 성격의 서비스, 위치추적 항상 허용 등으로 대리기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으므로, 앱 통합·유료서비스 개선·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선하고 노사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증인 문호상

- 상조업체의 선수금 중 예치하지 않는 50%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선수금이 사모펀드나 특수관계인에게 쓰이는 등 사실상 사금고처럼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

○ 증인 오준오

-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보람그룹 의결권 편중 해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한상공 및 보람그룹이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증인 권오성

- 현대위아의 가격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등 반복적인 하도급 법 위반행위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

○ 참고인 김현수

- LX하우시스 관련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신청 여부, 공사대금의 대여금 처리 등에 관하여 질의

○ 참고인 안부현

- 더스윙이 가맹사업임에도 법망을 회피하고, 청소년 무면허 이용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 취소할 수 있는 점 지적

7.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저감 대책 마련

- 분쟁조정 관련 소비자정책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이유, 신속조정트랙을 도입한 이유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
- 분쟁조정 처리 지연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단독조정제도’ 도입 등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 필요
-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다발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글로벌 OTA 여행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 강구 필요
- OTA 여행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TV홈쇼핑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피해 반복 발생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지적

○ 소비자안전·거래조사 관련 대응 마련

- 역류방지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
- 2023년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시험을 통해 인증 기준이 되는 OEM 부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규정도 미비함을 확인하였는데, 관련 기관(KAFA)에 제도개선 요청과 제품 폐기 외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
- 테슬라 배터리 오류(BMS a079)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유

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함을 지적

- 여행사 관련 피해구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계약 표준약관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
- 민간자격증이 범람하는 상황으로, 청년들을 위한 민간자격증 피해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추진 등 대응계획 마련 필요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관련

- 최근 조정 성립률이 하락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등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맹 분야 조정신청 사건 중 편의점업 관련 분쟁 비율이 높는데,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9.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및 금융정책 거버넌스 관련

- 현행 금산분리·은산분리·금가분리 체계가 산업자본의 금융 활용과 금융의 산업·디지털자산 투자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금산분리 제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 등 금산분리의 기본 취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고용·임금 등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논의에 앞서 사내유보금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물경제로의 환류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준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최근 금융정책이 증시 안정·자본시장 활성화에 치중한 반면 실물경기 침체와 연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미흡하여 ‘증시는 챙기고 서민은 놓쳤다’는 정책 불균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플랫폼 기업의 회생·정산 불능 시 선정산 대출 구조상 입점업체가 전액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은행은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리스크와 불공정성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 금융회사 분담금에 의존한 재정구조와 관련하여 감독기구의 공공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
- 낮은 보수, 승진 적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금융당국·공공기관 퇴직자가 최근 5년간 44%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 기능 약화와 혁신금융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대한 검사 파견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파견검사가 내부 인력을 지휘·평정하고 과도한 처우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금융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권한과 예금자 보호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금융당국 차원의 통합적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
- 미국·영국에서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된 프린스그룹과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 지점 간에 예금 및 해외송금 거래가 존재하고, 약 912억 원 상당의 자금이 캄보디아 현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자금 유입 현황 파악 및 제재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임원 성과급이 확대되는 등 성과는 사유화되고 손실은 소비자와 시장이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으며, 내부통제 책임과 보수 환수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 배임죄 폐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과는 무관하게 금융권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공백을 초래하여 소비자 신뢰 붕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에서 서민금융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자금인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권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 실적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상호금융권에 대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130%로 일괄 상향하는 조치가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서민·지역경제 지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자영업자 대출에서 취약차주 비중과 상호금융권 부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대형화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기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자본규제 조정이 오히려 기업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담보 부족 및 동산담보대출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부동산담보 외에 투명하고 안전한 주식담보대출 제도화를 금융권 자율혁신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 은행 담보물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담보물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감정평가법)과 은행의 자체평가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간 정합성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국책은행 대출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된 정황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및 국책은행 대출자금 용도관리·사후점검 체계 전반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전원 불허되면서 비수도권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역소득의 대규모 역외 유출이 지속되는 등 지역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 금지, 은행권 대출 총량 할당 방식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간 실질적 경쟁의 제약으로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은행 점포 감소로 금융접근성 저하와 지역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제시되는 비대면·ATM·이동점포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은행대리업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 문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 제도가 사업자 참여 부족, 전문성 미흡, 책임소재 불명확 등 한계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금융권 AI 상담서비스가 비용 절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의 상담 접근성이 저하되고, 상담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 국민성장펀드가 다양한 대체 투자수단과의 경쟁 속에서 국민 참여를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정부 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의 수도권 편중과 뉴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 제기
- 녹색금융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가운데, 기관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여부가 상이하여 정책 정합성이 훼손되고 그린워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은행 형태 대비 공사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동남권 투자은행 설치 공약이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 공약 위반이라는 지적
- 민생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집행 지연으로 카드사가 대규모 단기차입과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사의 비용 전가 문제를 충분히 관리·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

-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업자 이탈이 확대되고 있으며, 복잡한 인증 절차, 불명확한 전송비용 산정 기준 등이 서비스 혁신과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 한국거래소의 금융자사고 설립 추진, 예금보험공사 잦은 해외출장, 금융감독원 해외연수 대상자의 근무 태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 말 인사 단행 등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
-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회수 극대화 원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업 보증보험사로서의 공공적 역할 약화와 보증보험 시장 안정성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금융회사 비용 증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와 관련, 총인건비 제한으로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
- 2024년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 조직적 은폐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
- 12·3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F4 회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목적을 넘어 불법 계엄을 지원한 결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해당 회의 과정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

○ 부동산정책 관련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전세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반면,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단기적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정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금융당국에 과도한 정책 부담이 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와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부동산 대책의 전면에서 금융정책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 대환대출 LTV 등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대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비주택 담보대출 등 핵심 내용이 금융위원회 설명을 포함해 수차례 정정되면서 정부 부처 간 사전 조율 부족과 정책 메시지 혼선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지적
-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전세퇴거자금·빌라·중도금대출 등에 LTV 40%를 일률 적용함에 따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흐름을 위축시켜 오히려 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
- 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이 무주택 실수요자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시켜 예상보다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거론 등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불안과 매물 잠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책모기지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실수요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6·27 부동산대책 이후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승인 실적 급감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의 전세사기 예방 심사기준(확대 선순위 요건 강화)이 정책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 보호 및 예방 기능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

-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신탁사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GDP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해외 부동산 버블 시기 적용 사례(15~25%)와 비교해 하단 수준으로 운영되고 DSR 적용이 강화·완화를 반복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전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가계부채가 GDP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부채 악순환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 지분등기 형태의 이른바 '땅콩주택'가 분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별 담보 인정 기준이 상이하여 환가성·담보가치 판단이 일관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개념이 여신 실무에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대출·거래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공장 담보인정비율이 낮고, 동일 산업단지가 행정구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 지적
- 국내 마이너스 통장 잔액과 신규 개설 건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영끌 빚투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므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 고신용자 금리 인상·저신용자 지원, 대규모 채무조정 및 금융사 출연 확대 등 최근 금융정책 기조가 시장금리 기능과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관치·정치 금융으로 변질되며,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어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신용사면 정책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시행되면서 동일 차주가 재차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연체기록 삭제가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추진 과정에서 대부업권 장기연체채권 규모에 대한 정부의 초기 추정이 실제보다 과소하였고, 장기연체채권 매입가율을 일률적으로 5%로 설정함에 따라 대부업계 평균 매입가율과 괴리가 발생하여 참여가 저조한 상황인 가운데, 대부업계가 장기연체채권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를 감안할 때 현행 매입가율 및 제도 설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한 원금 감면액이 8조 원에 육박하면서, 채무조정 본래 취지인 재기 지원보다는 사실상 ‘빚 탕감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개인 채무조정 및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이 신용질서 훼손이라는 비판과 달리, 경제위기·정책 실패 등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다중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의견 제기
-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에도 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책자금 채권은 배드뱅크 매입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회수 실익이 없는 소송이 지속되고 있고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금융권 출연 종료 시점과 기금 설립 시점 간 공백이 예상되어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가 2018년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보증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실적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연대보증 제도 폐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대채무가 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 지원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
-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면서 중저신용자의 실질적인 생활자금 접근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
- 은행권 채무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낮은 신청·수용 실적과 불승인 사유의 비표준·비공개 등으로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
-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서 가입자 수요 예측의 반복적 실패로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현행 제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악용되어,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
-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의 배상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배상 주체인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제도는 금융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별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기준이 자율규제에 맡겨져 탐지율 편차가 크고, 자율배상 중심의 현행 피해구제 체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불법사금융 지원이 은행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에 의존하는 등 재원 구조가 취약하여 기금 소진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겸영하면서 금융당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분

할하고 지자체 등록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 대한 과잉대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율이 평균 1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행 법체계상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형사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이중 절차로 인해 실질적 환수가 곤란하다는 지적

○ 자본시장 관련

-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거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 룰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시장의 자율적 성장과 경쟁을 제약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대응이 거래소·금융당국·수사기관으로 분산되어 제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거래시장에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경영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예산·경영공시·경영평가 등에 관여하는 현 감독 방식이 경쟁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는 등 수익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상장·공시·청산결제 기능을 독점하는 거래소의 구조가 시장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 국면에서도 규제·인프라 측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
-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프리마켓에서 소량 거래로 시초가가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가격 왜곡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인가 당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검토 했는지와 피해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명확한 대응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거래시간 확대 등으로 투자자 편의는 증가하였으나, 종목별·시장 전체 거래량 제한 규제로 거래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최선집행 의무 이행을 위한 스마트 주문배분시스템(SOR)의 안정성 문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문제 지적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추진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인 루센트 블록과 계약을 체결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가 별도 컨소시엄으로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한국거래소까지 경쟁에 참여하려는 상황은 샌드박스 취지 및 공공성을 훼손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성과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과정에서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경험이나 공적 기여가 평가항목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자본력이 큰 후발주자에게 유리한 인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
- IMA 인가심사 기준에 사회적 신용(금융소비자 보호, 사고시 배상비율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신뢰성 부족과 사후 관리 부재로 부실 상장을 양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장 기업이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매출 실적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국내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의 증권사 참여와 거래 규모가 해외주식 대비 현저히 낮아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타사 대체출고가 전화·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투자자 불편과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탁결제원 전산 인프라 미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

-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의 관리보수·성과보수, 투자전략, 수익률, 자금 회수 구조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과 정보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
- 사모펀드(PEF)가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 및 이사회 관여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실과 변칙적 자산유동화, 단기사채 무공시 발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 인수기업 전반에 대한 감독·공시·사전 점검 체계의 미비가 드러났다는 지적
-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직전 전단채를 발행한 점과 관련하여 사기 전단채 해당 여부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 회생절차를 활용한 엑시트 이후 펀드 해산 등 먹튀 우려, 고려아연 관련 업무집행사원 적격성,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사모펀드 진입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
-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IRR 충족수수료 부과가 이자제한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취지를 우회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상 이자(미래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
- MBK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참가계약 방식의 변칙적 자산유동화 및 증권신고서 미제출 단기사채 발행 등으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MBK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수사에만 의존한 금융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모펀드 GP의 정관상 책임 추궁 및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 관련 조치 등 가능한 행정적 대응이 충분히 검토·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 및 주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한 바 없고,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적 자료 제출·공개 요구나 평가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감독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기후변화 등 ESG 리스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적용 자산군이 상장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입기관 대비 이행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하여 특사경 인지수사권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검찰 이첩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행정제재가 사실상 중단되는 관행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 및 제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
-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및 작전세력 가담, IR 대행사를 매개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와 사전 예방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자본시장 및 언론의 신뢰 훼손과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 웰바이오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현행 시장감시·심리·조사에서 수사 이첩까지의 절차가 장기화되어 주가조작 세력의 도피 및 부당이득 환수가 곤란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 점검과 시장감시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지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임에도 최근 5년간 신고 사건의 대부분이 단순종결 처리(약 95.5%)되었으며, 이 중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관련 신고가 포함된 점 지적
- 네이버 - 두나무 합병설과 관련하여 공식 공시가 '미확정' 단계에 그친 상태에서 보도 이전부터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어, 정보 유출 경위와 공시·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정지 직전 때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고발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
-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안내 및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공적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이 세부 심사기준·투자한도·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 자사주 과다 보유와 이를 시가총액·주당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관행이 주가 왜곡과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예외적 처분 시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주주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유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가치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해외 입법례는 제한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자사주 보유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상 일반화된 제도는 아니며, 도입 시 경영권 방어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자사주를 교환사채(EB)로 발행할 경우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행 방식·가격·공시 등에 관한 규율이 미흡하여 자사주 소각

- 회피, 경영권 방어, 기업 불법승계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코스피 상승세의 지속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주요 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제도를 상호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밸류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정부당국·국민연금 간 역할이 분산되어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므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를 제기했다는 지적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가 연기되면서 기업의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 및 글로벌 투자 유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 성별 임금 격차 관련 핵심 정보가 공시서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금융권 내 구조적 성차별 실태를 검증·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국내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국내 운용사 대비 설립 요건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해외 투자자산 실사 한계, 사고 발생 시 국내 분쟁조정·보상체계 미적용 등으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
 -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과징금 감경 기준 개정이 제재 실효성을 약화시켜 제재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ELS는 사모펀드 사태와 성격이 다른 판매상품으로, 은행권 ELS 판매잔액(약 15.6조원)에 비해 실제 판매수수료 수익은 약 1%(1,800억원)에 불과한데도 불완전판매 제재가 은행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징금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소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과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채권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 재도입이나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신탁

사가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귀책사유 발생 시에도 신탁재산 부족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는 수분양자 보호 취지에 반하고, 신탁업자의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및 지정제 유예 등 회계규율 완화 정책으로 지정 대상이 급감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에 대한 회계 규율이 약화되고, 국제 회계 투명성 순위 하락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재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 의무 부재로 경영·회계 투명성이 취약해 MBK·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외국계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외부감사를 회피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미이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특별실무수습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경험이 없는 회계사 양산 우려
- 미지정 수습 회계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습 회계사 인력을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과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IFRS 18 도입으로 영업손익에 비반복·일시적 항목이 포함되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 평가에 혼란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상장심사, 공모가 산정, 대체거래소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 예보채상환기금을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 설립 문제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 디지털자산 관련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의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혁신과 발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구조에 치우쳐 발행사의 수익모델·성장 지속성 검토가 부족하고, 비금융권·가상자산거래소 참여 시 플랫폼 종속 및 이해충돌로 인한 투자자·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글로벌 금융이 디지털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대응이 위험 관리 중심에 머물러 스테이블코인·RWA·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가상자산 정책에 따른 외국인 실명계좌 제한, 법인계좌 미허용, 현물 ETF 배제, 불리한 과세체계 등으로 외국인·기관 자금 유입이 제한되고,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화 및 제도적 활성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안을 포함한 입법 논의의 필요성 제기
-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인 신규계좌 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추진기간·책임자를 포함한 이행 로드맵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메신저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환전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트래블룰·KYC·AML이 적용되지 않아 자금세탁·사기·환치기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 캄보디아 스캠·인신매매 등 범죄수익의 가상자산 세탁 거점으로 지목된 해

외 가상자산거래소(후이원, BYEX 등)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유출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선제적 감지·차단 및 자금세탁 위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미등록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통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적
- 원화거래소 연계 은행을 매개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미흡,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감독 사각지대 등 복합적 위험을 수반하여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승인 판단 기준의 적정성과 기존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이 다수 금융기관으로 과도하게 다변화될 경우 자금 흐름에 대한 일원적 감독이 어려워져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고팍스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관련 대규모 피해가 완전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및 대주주 변경이 진행되었음에도, 인수 조건으로 제시된 피해 전액 상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
- 바이낸스가 과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미국 정부 보도자료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 그룹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권 교체 이후 단기간 내 고팍스 대주주 변경이 승인된 경위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해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 코인 연계 카드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해외 코인 연계 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제 지적

○ 기타(보험·결제·금융보안)

- 자동차보험에서 품질인증부품 제도와 관련하여, 품질인증 부품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인증시험이 보험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에 편중되며,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가연성·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여부가 보험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형 화재 발생 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
-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불안정 심화로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보험료 대납 규제가 사회공헌 목적의 보험료 지원이나 청년 대상 무료·지원형 보험 도입까지 제한하고 있어, 공적·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청년 안전망 확충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보험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듀레이션갭 규제로 공시이율 하락 및 보험료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실손24)이 법률의 개정 및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연계율이 낮고 이용 실적이 미진한 등 운영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
- 공제조합 보상 담당 인력이 손해사정사 시험 면제 및 실무수습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격 인력 확보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
- 보험상품 설계에 필요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고령자·유병력자 대상 보험상품 개발 및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

다는 지적

- 티메프 사태 이후에도 다단계 PG 구조 하에서 하위가맹점의 유사수신 등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지적
- PG 정산자금 지급보증 채널이 SGI서울보증에 한정되어 있는 독점적 구조 문제 지적
- SGI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별 개별 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와 보증 한도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산대금 지급보증 등에서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 공공 VAN을 지정하여 공공 PG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
- 카드대출 연체규모가 증가하면 향후 경기회복 지연시 카드사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소상공인의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카드매출전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과 달리 카드사·간편결제 앱이 이를 '전자영수증'으로 표기·제공하여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종이영수증 판매 관행과 과다 영수증 출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자영수증 확산 및 종이영수증 감축을 위한 자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간편결제 이용 시 결제내역에 실제 가맹점명이 아닌 플랫폼명(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만 표시되고 다단계 PG 구조 개선이 지연되면서, 매출처 추적 곤란을 악용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세 및 부정경비 처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
- 카드사들이 가맹점 결제서비스 혁신보다는 카드론 등 개인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 치중하는 가운데, 소수 배달·예약·페이 플랫폼이 결제데이터를 독과점하고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법률상 이용이 강제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수수료가 온투업계 전체 대출취급 수수료의 상당 부분(최대 10%)을 차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있고, 중도상환·만기연장·대환 등 예견된 대출 절차에 대한 환불 규정 및 시스템(API)이 미비하여 온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개별 민원 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금융보안원이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강제력과 실질적 조치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채 형식적 평가와 사후 수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웹로직 해킹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롯데카드가 이를 조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
- 금융권 해킹 시도 및 이상거래 탐지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과 전담 인력 투자가 증가 추세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롯데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 결제 인프라에 대한 사전 통제체계에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
-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보안 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증인 서원주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연간 대상기업 수가 제한적이고,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공개 관리로 이어지는 단계가 과도하게 장기간 소요되며,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가형 활동 사례가 없고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활동 및 사모펀드(대체투자)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 국민연금이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인수 초기부터 부동산 매각(세일즈 앤드 리스 백)을 통한 현금 회수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내부 투자위험보고서를 통해 인지하고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여 최대 약 9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 지적

○ 중인 양혁승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에서 채무 소각 집행률이 1%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 성과가 미흡하고 이자수익·운영비 지출만 지속된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대표가 새도약기금 대표로 선임되어 대규모 채무탕감 사업을 총괄하게 된 것은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10. 금융감독원

○ 은행업권 관련

-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 관련 후보군 접수 가능기간이 매우 짧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보이며, 지주회사 선거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2023년 부산은행의 도이치모터스 등 100억 신용대출에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현금부자가 아니라 신용도가 좋고 상환능력이 있는 국민이 수도권 주택구입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을 빙자하여 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광고를 하고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고 지적
- 이재명 정부는 국가정책을 통해 K-배터리를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축으로 보고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제도는 정부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기업들의 신규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
- 주채무계열 정성평가 시 배터리업계의 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
- 주채무계열 정량평가 시 전기차 캐즘으로 일시적 업황의 둔화로 인한 1년간의 영업손실에 따라 평가지표가 최고에서 최하수준 점수인 부실기업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무구조 평가방식의 여러 재무지표 중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대표되어 1년 만에 부실기업처럼 평가된다고 지적
- 주채무계열제도의 계열분류와 관련하여 반기기준 중간평가로 약정계열을 선정하는 것이 운영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 배터리 기업의 재무구조약정이 기업의 영업손실 발생과 기업과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평가점수 하향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인해 주채권은행의 평가지표가 수정되어 재평가를 하였고 자율추진 대상일 수 있었던 배터리기업이 정보제공약정대상, 재무구조약정대상으로 계열 대상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
-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캐즘 극복 및 가격경쟁력 확보, K-배터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채무계열 관리를 제외할 수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
- 금융사고의 율빠미 공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기업은행이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자를 부행장으로 승진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제재심이 필요하다고 지적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후 친인척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DB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은행은 가족DB 등록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 금융회사 임직원 주도로 거액의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은행별 점포 축소 이후 대체수단 이용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 점포 축소에 따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ELS 과징금 제재시 금융회사의 잘못된 불완전판매에 필요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자칫 금융의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되므로 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간의 노사협의를 사전에 보고받고 개입한 것과 같은 부당한 노동개입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

- 선정산대출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이 정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입점업체가 사실상 은행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의 부당성을 지적
- 세종·충청권 명의도용 전세사기대출 관련 집단 민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음을 지적
- 은행이 서민금융 출연에는 인색한 반면 법률자문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
- 은행에서 특수 물건에 대해 담보가치를 산정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은행의 종교 관련 대출이 특정 종교에 치우쳐져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

○ 중소기업은행 관련

- 금융부조리 신고를 받으면 신탁중앙회에 넘겨서 사실조회 요청을 하고 중앙회에서 문제없다고 회신하면 금감원이 살펴보지 않고 종결해버린다고 지적
- 농협 단위조합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원칙과 달리 과다 집행하여 피해가 발생한 민원을 살펴보고 조치를 해주기 바라며,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새마을금고의 높은 부실률, 부실 공시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권 이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2017년~2018년 용인시 성북지구 조합사업 관련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불법 공동대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가입자들이 계속 수수료를 내고 있는바, 소비자가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

요가 있다고 지적

-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직접 결제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
- 롯데카드의 경우 검사 결과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
- 현대카드가 카드 단종시 대체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 혜택이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않으며, 카드 신청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타 카드사와 다르게 카드 수령 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지적
- MBK의 복잡한 펀드 구조와 인수기업 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MBK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
- 공동정상화펀드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은 부실이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PF시장 정상화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금융투자업권 관련

- 메리츠증권이 부동산PF 사업에서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
- 사모펀드의 투자계획을 금융당국 및 투자자들이 보고 받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 등 개입이 필요하며, 사모펀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견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에 대한 피해금 선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 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고령투자자의 합리적인 시장 접근과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고령 투자자 보호정책을 평가하고 고령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한테 판매하는 CLO 펀드의 위험성이 높지만 사모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으며, CFD 잔고가 2.4조에 달하는데 차액결제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IMA 심사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등의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증권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을 전산 투자비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전산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체계의 문제라고 지적
- 증권사 전산사고 발생시 증권사 자체 기준으로 보상하다 보니 같은 피해임에도 회사별로 보상 편차가 크다고 지적
- 자본시장법 제71조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 진단 및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대체거래소의 최선집행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
- 일반투자자 신고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감독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신고 및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 2018년 해외비상장주식 판매시 신한투자증권이 고객투자성향을 조작한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개인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 투자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해외 파생상품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지적
-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이행 평가 및 점검을 일본과 같이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해야 한다고 지적

○ 보험업권 관련

- 보험회사의 다태아 보험 인수 건수가 늘지 않고 있으므로 단태아와 다태아 간 인수기준 형평성 제고, 실효성 있는 사후 점검방안 등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직접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영업건전성과 소비자피해지표 상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지적
-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과다하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면역증강제 처방이 과다하다고 지적
-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는 총량 제한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적
- 관행적으로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와 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실손보험 정상화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필수의료 정상화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되는데, 현행 제도상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

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

- 5세대 실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료이용이 과다한 가입자의 경우 보상 혜택이 큰 기존 상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5세대 실손 전환 유인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지적
-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액이 많은 상위 9%의 가입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80%를 수령하는 보험금 불균형이 있는데, 이에 반해 보험료는 인상범위에 따른 당국의 규제로 가입자간 큰 폭으로 차등을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금 수령 규모를 일부 반영하여 가입자별 보험료 수준을 현실화 하면 5세대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관리 급여 도입 외에도 현행 비급여 중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비급여는 퇴출 절차와 더불어 가격 규제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관리법 등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 동일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 비급여는 실손에서 전면 제외되고 있으며, 5세대 실손보험 설계 과정에서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재라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한의 비급여 보장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외래 보장 시 “20% 또는 1만원 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중 높은 금액을 가입자 자기부담으로 설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높은 한의의료를 실손보험 체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설계사 이탈이 예상된다고 지적
- 의료자문 선정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어 공정한 의료자문이 어렵다고 지적

- 자동차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특히 한방 처치료가 폭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
- 렌트비 및 자동차 수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 억제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
- 간병인보험 부정수급자, 위험손해율 폭증 현상에 대응하여 간병인 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현행법상 금지되는 자기계약이 보험업계에 성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
-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상의 전문인 수와 사고 당시의 전문인 수가 다른 경우 보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성과 위험율을 요양보호사수로 산출하는 보험인데 전문인 수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지적
- 실손보험의 보험금 불균형 지급, 비급여 관리의 부재, 치료효과 없는 비급여 항목의 퇴출 불가 등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 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체계 왜곡, 의료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 대리운전 보험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개별 대리운전업체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농협생명이 사은품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을 한 정황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변액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지 비율이 높고, 장기 유지하더라도 실질 수익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
- 법인보험대리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지적

○ 공시 관련

- XBRL 재무정보 공시의 영문보고서 오류 및 XBRL 변환으로 인해 가독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점 및 XBRL 편집기의 경우 금융감독원 자체 개발 편집기 사용 여부를 자율화할 필요성을 지적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관련한 법적 규율이 없어서 사후 공시만 점검하고 있는데 스톡옵션과 같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적자가 발생해도 RSU를 부여받는 문제를 없애고 공시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다른 나라들은 XBRL 작성기를 완전히 자율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작성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법인에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팀 직원들이 결산 때 밤을 새우는 등 인건비 낭비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자사주 소각 관련하여 우회 목적 EB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했더니 PRS 발행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
-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우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
- 기업들의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결의 이후 자금활용내역 사전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지, 금융당국차원에서 공시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지적

○ 자본시장 조사 관련

-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조사 등 불공정거래 조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
-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이 수사중이더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는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한국거래소가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심리 결과보고서를 뒤늦게 보고한 상황에 대해 복기가 필요하다는 지적
- 검찰 폐지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수사기간도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금융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 글로벌IB의 무차입공매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과도한 무료이벤트 등 현금성 혜택 제공으로 인해 시장질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
- 자산운용사 등의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및 제재가 부진함을 지적
- DB그룹에서 의결권 제한 계약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위반인 경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사항 중 단순종결 비중이 높고, 신고포상 사업의 예산 확보가 부진함을 지적
- 매도리포트가 거의 없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 실적은 0건에 불과하다는 지적
-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
- 민중기 특별검사가 네오세미테크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회계 관련

- 2018년 외감법 개혁 당시 시행했던 제도들을 다시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
-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적용의 문제점과 회계기준원 원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를 지적
-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적용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전제가 깨졌고,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도 명백한 이중 잣대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질의회신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IFRS IC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소비자보호 관련

-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강하게 권유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
-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시켜야 된다고 지적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회사에게 단순히 판매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도록 영미권의 컨슈머 듀티 철학을 도입해야 된다고 지적
-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통창구를 열어 중재자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채 각하 처분으로 끝나 실효성이 없고, 백내장 민원의 경우 각하 처분 통보를 받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

- 백내장 수술에서 최근의 무릎 줄기세포 시술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실손보험금 분쟁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해 피해자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
- 신탁 4개 조합이 공동 취급한 대출 사례와 관련하여 내규 위반, 보험끼워팔기 등이 의심되며, 민원인이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장치이나 금융사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한데,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중립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은행 지점에 원격으로 코드를 심어서 실시간으로 개인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사기계좌로 신고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상황과 카드사의 정보보호 투자 미흡을 지적

○ 민생금융 관련

- 보험사기 적발시 처벌 수위가 약하고 수사기관 공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
-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험사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
- 실손의료보험 허위 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
- 렌탈채권과 통신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추심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추심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출금지연, 사기범 계정 지급정지 및 환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이의제기 조치 기간이 길다는 지적
-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 신고 대비 포상 실적이 미비하고, 단순 피해구제 신청 신고만 접수되는 상황임을 지적
- 플랫폼별 불법 금융광고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사업자들 중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제도 시행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배상 완료가 18건 (10%)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 구제가 미미하고, 피해자 과실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배상심사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
-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대면 거래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에도 직접 송금형은 배상에서 제외되는 등 배상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
- 은행의 보이스피싱 배상비율 협상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은행이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배상비율을 통보하니 은행들이 책임분담기준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배상 비율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부터 완료까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위에 동 법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상조회 등의 차입·적립금 모집행위가 사실상 '비금

유통기관형 금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합동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감독하여야 한다고 지적

- 국내 은행들의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제재대상인 프린스그룹 등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고, 현재도 일부 잔액이 남아있으며, 그중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연계한 은행도 있다고 지적
- 은행의 FDS 탐지 실적 저조 및 은행간 격차, 탐지 정보의 공유 저조 등에 대해 지적
- 명륜당 등 가맹본부가 사실상 대부업체를 겸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쪼개기 등록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디지털·IT·가상자산 관련

- 자산별 규제 수준 차등화,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국가간 공조, 유동성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디지털 자산 금융감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SGI랜섬웨어 해킹,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권 해킹 사고가 계속 반복 되는데, 사후 대책이 재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보안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필요시 사고나면 즉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
- 보안사고 피해 구제 및 보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카드사 정보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CISO 전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수료 인하나페이백 등 이벤트를 자주 열어 특

정 종목의 거래량과 가격변동성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킨다고 지적

- 가상자산 감독체계가 자율규제 후 사후점검 수준에 묶이면서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거의 같은 날 상장 후 동일한 날짜에 유의 지정하여 부실심사와 담합 상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지적
-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 DAXA의 자율 규제 실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제2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
- 정산대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에 강화된 내용으로 규제되어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
- 해외기업이 선불업 등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역차별,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 10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망을 확장하면서도 보안예산을 줄여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
- 빗썸은 반복적인 노동권 침해행위 반복, 상장비리에 연루된 임원에게 고액의 보수 지급, 임원의 사택제도 악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IPO 심사 및 감독과정에서 이러한 비재무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공시 적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빗썸의 테더 급등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감독, 거래소 유동성 관리, 자동청산 시스템 점검 같은 리스크 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무선 백도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준비가 미

흡함을 지적

- 롯데카드가 웹로직 서버 일부를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도 뒤늦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
-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검사 시 카드사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

○ 기획·전략·법무 관련

- 책무구조도 마련이 금융감독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단순한 감독당국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략할 수 있다고 지적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금융상황분석팀이 민간인 사찰과 같은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지적
- 순환근무로 인해 금융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낮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서로 정보 공유하고 공동검사를 늘리면 금융사고 중에 일부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
-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직원의 판매책임이 아닌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감독총괄국 금융상황분석팀이 금융 현안이 아니라 정치 정보를 수집하여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고 지적
- 파견검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
-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권 및 로펌 진출이 많아지며 전관예우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금융감독원 문서의 보존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
-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창천과 자문 계약, 용역 의뢰 등 협업을 진행할 경우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투명성, 공정성, 균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법률자문을 집중시킨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향후 감독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 내부 인사시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해외연수 선정 후에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 권역 공통이슈 관련

- 디스커버리펀드에 관한 4.23. 추가 분쟁조정 후 최종 사적화해를 한 피해자들이 기합의한 피해자들에 비해 입게 된 기회비용 손실에 관하여 기업은행 등과 자발적 사적화해를 진행중인 IBK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지연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하기 전에 긴급하게 사기 전단채 발행을 했고 이에 대해 2012년 LIG, 2013년 동양 사태를 참고하여 MBK를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
- 계좌추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수협과 수협중앙회의 대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금융권 차명계좌 개설 처벌 수준이 낮다고 지적

- 간병인 보험의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처 합동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
- 모바일상품권 환불 등을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자금이 더 이상 세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의 불투명성, 책임 확보 수단 미비, 형식성과 관련 인력의 부족에 대해 지적
- 금융감독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산건전성 평가 조항에 기후리스크 고려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주식회사 인덱스마인과 한국투자증권 간 분쟁에 금융감독원이 연루된 사안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내부개입이나 축소 시도 없이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기타

-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자금 규제와 배치되며, 향후 부동산 증여 또는 처분 계획에 대해 질의
- 금융감독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시장 감시자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과 그로 인한 독립성 등 약화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

○ 증인 이정의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스튜어드십 활동 중 핵심은 이행

평가인데 ESG 기준원에서 이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들의 활동점검이나 정보 공개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ESG기준원이 ESG평가 및 공시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제기

○ 증인 김윤식

- 신탁의 내부통제 실패, 임원 가족회사 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 대상도 아닌데 과도하게 낮은 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 대전에 있는 지역신탁의 내부제보자 면직 징계처리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
- 신탁의 일탈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이 금융부조리신고를 하면 금감원이 중앙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종결되고 있고,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11. 예금보험공사

○ SGI서울보증 관련

-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매각 관련하여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예보료율 인상 관련

-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회사가 대출금리 인상 또는 예금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나치게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5대 시중은행의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고려할 때 예보료 인상분은 은행이 직접 감당 가능한 수준임을 지적
-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국회와 금융업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추진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MOU 체결(2024년 11월) 등의 실적이 조속히 회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예금보험공사 사옥 매각 및 공적자금 회수 관련

-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KR&C가 동아생명 부실정리 과정에서 舊 예보기금(現 예보채상환기금)의 자금지원을 통해 인수한 자산이 장기간 매각·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부실보험회사 정리 관련

- 현행 부실보험회사 정리방식은 도덕적 해이, 타업권과의 형평성, 부실책임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인 런오프 제도 및 기존 계약자 손실분담 제도 등의 검토 필요성을 지적

○ 금감원과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관련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부실예방을 위해 부보예금 비중이 높은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 공동검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 급격한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선진국은 금융권 스스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시장경색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신속정리제도 도입 관련

- 신속정리제도는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인건비 부담 관련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영업손실이 제도 시행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여 누적손실액이 43억원을 넘기고 있으며, 누적 적자가 가중될 경우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과 착오송금으로부터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
- 2025년부터 착오송금반환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착오송금 신청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지원계정의 영업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계정의 인건비 부분은 공사 운영경비 계정에서 충당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파견검사 관련

-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검사들이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있고, 그 처우 수준이 높음을 지적

○ 상호금융업권 예금보험제도 단일화 관련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감독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상호금융업권별 기금으로 운영되는 예금자보험체제도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

○ 저축은행 특별계정 처리방안 관련

- 2025년 6월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순자산은 △3.6조원으로 2026년 말 운영기한 종료시점까지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영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동반성장협력대출 관련

- 현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제도는 최대 지원기간 규정이 없어 혜택이 특정 중소기업에 장기간 집중되고 신규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

○ 해외은닉재산 회수 관련

- 회수율이 하락한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회수액 대비 비용 지출이 높은 수준이므로, 실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장기 미회수 사건에 대한 회수 노력 및 각국 법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 회수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
- 발견 실적이 북미에 편중된 이유 및 동남아시아와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사 수준 및 관련 인력, 예산, 전문성을 질의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관련

- 윤석열 정부 이후 국유재산 헐값매각이 이루어졌음을 지적
-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고 장기간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어 국유재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을 지적
- 국유농지의 약 95%가 기존 계약자에게 재계약되고 있으므로, 국유농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 보고가 필요함을 지적
- 국·공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존 사업 수행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
- 국·공유재산 교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폐파출소의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가계지원 관련

-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도 필요한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집행실적이 당초 목표의 1%에 불과하는 등 지원

성과가 미흡하므로, 재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25년간 빚 독촉이 가능하므로 시효연장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새도약기금 관련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 일괄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
- 새도약기금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되고 있고 대부업체의 비협조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운영 할 것을 지적
- IMF 외환위기 당시 인수한 장기연체채권이 1.8조원 정도 잔존하고 있는데, 향후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조직 운영

- 서대문·중부세무서에서 시설관리 민간용역에 대한 고용승계를 진행했는데 다른 사업장에도 고용승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인정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을 지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 문제 지적
- 임원급 인사의 적체 및 지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

○ 기타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채권을 악성 대부업체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경쟁입찰 참여제한 해제 등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회취약계층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 전세물건에 대한 공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매절차에 대한 권리행사 안내 등 실효적인 임차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공자산의 매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비드시스템 입찰방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체납국세 위탁징수율이 저조한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지원실적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한 산업전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 실적 확대를 위해 인수대상을 동산담보권에 서 공장저당권으로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응동학원 채권 회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모기지 관련

- 맞벌이 부부의 정책모기지 등 이용 시 소득요건에 대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담당 정부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연체율, 자산 및 소득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 우대 금리 도입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 금리인상 없는 유한책임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할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층,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정책이 아닌 데이터와 시장에 기반한 장기정책을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

○ 주택보증 관련

-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중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 이용자가 77.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급 물량 감소나 대출 기회 축소를 이유로 취약계층 대상의 전세사기 심사기준(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 적용을 유보하고 있는 소극적 태도를 지적
- 임차인이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특별구입자금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필요
-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하여도 동일기업 대상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청년 전세보증의 경우 일반 전세보증 대비 높은 보증사고 발생률과 절반 수

준의 낮은 채권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과 청년 전세보증의 공급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정대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
-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보증에 대해 지적
- 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가운데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조정할 필요
- 위탁보증 심사절차 개선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현황을 집계하고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과 업무질의 회신 사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필요
- 임대차계약체결 유의사항 설명서에 선순위채권이 있을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보증취급 시 소액임차인 기준 관련 주택임대차법 관계법령의 내용을, 특히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개선할 필요
- 전세보증 선순위요건 도입으로 인한 전세사고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주택연금 관련

- 주택가격 변동을 감안한 월지급금 선택형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지급금을 높이고 공사의 대위변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공사의 직접지급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주택가격 및 가입연령에 의한 연금지급액의 차이가 미미함을 지적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매각 외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통한 상

환 방안 마련 필요

-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요건 정비 및 자녀세대 대상 사회적 캠페인 차원의 홍보 필요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연금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귀농·귀어·귀촌, 인구감소지역 이주, 장기요양 목적의 이주 등을 실거주 예외 사유로 포함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

○ 기타사항

-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
- 공사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므로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 필요

14. 신용보증기금

○ 정책금융 관련

- 저신용 기업도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창업 1년 미만 딥테크 기업의 창업초기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청년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 및 보증연계투자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
- 건설업 경기가 장기 불황인 상황에서 중소건설사에 대한 신규보증 감소는 연쇄 도산의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보증지원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이커머스 정산지연 특례보증의 지원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저조한 것을 지적
- 국가 전략기술 중심지인 대전지역에 대한 일반보증 공급 비중이 2.2%, 위기 대응특례보증 공급 비중이 1.3%로 저조한 것을 지적
- 유동화회사보증 연대보증인 구상권 회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
- 예비창업보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대출 의심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연루된 직원에 대한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
- 예비창업보증의 전문직 쏠림 현상 개선이 필요하고, 자기자금한도 폐지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
- 스타트업에 대한 고위험·저회수 대출형 지원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주)명륜당의 정책금융을 활용한 고금리 대부행위 논란에 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지방의 교통 인프라 및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팩토링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즉시 구매기업 이용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팩토링을 이용하는 판매기업에게 자금경색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매기업의 이용한도 감액 유예기간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보험료지원 협약 등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선투자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타기관 대비 저조한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 보증 규모와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보증공급규모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출연 협약보증 정책을 추진할 필요하다는 지적
- 한계기업들이 장기간 보증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기타

- 현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본부장 및 부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이 차기 이사장의 인사권과 경영철학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
- 정부 방침과 다르게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징계자에게 성과급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기관장 해외출장 시 출장목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기준 현실화 등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
-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채용 지역의 광역화 등의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
- 채권보전조치 시 현금공탁에 따른 담보비용 절감을 위해 현금공탁 대신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
- 대구지역의 협력·주력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실적, 지역은행 예치금 규모 등이 저조함을 지적

15. 한국산업은행

- 명륜당이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과잉대부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출 심사시 자금 세탁 의심 보고를 누락하고 거래를 종료하지 않았음을 지적
-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양호한 등급으로 신용을 평가한 기업에 대하여 1년 이내 부실 발생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안은 부산 시민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
-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 금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지적
- 기존 정책펀드가 집행률이 미비한데도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새롭게 만드는 점을 지적
- 주채무계열 평가시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이익 배당권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성을 훼손하였음을 지적
- 원전산업 성장펀드는 산업통상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며, 다른 정책펀드와 달리 조성 기간이 짧고, 민간자금 비중이 낮음을 지적
- 해외법인 배당 실적이 저조하므로 해외법인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로 환류하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

-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출자를 통한 Co-GP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
- 신재생에너지 대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첨단전략산업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두기 위한 예외 입법이 필요함을 지적
-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집행 실적이 부진했으며,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16. 중소기업은행

○ 경영 관련

-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 삭제, 순차적인 분할감사 실시 등 은폐·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문제 지적
- 시중은행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비 기업은행 근로자 임금이 낮고, 미지급 임금 또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고 있고,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도입이 지연돼 자회사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
- 자회사 중 IBK서비스의 처우가 특히 열악하고, IBK시스템은 동일업무에 일반 정규직과 외 전문정규직 등 차별 직군을 운영한다는 지적
- 과징금, 과태료 등 대규모 제재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은행의 준법경영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
- 정부 출자로 인한 주식 가치 희석 효과로 주가 상승폭이 주요 은행 대비 낮은 점과, 배당 정책 측면에서 분기 배당 등 배당 방식 검토 필요성을 지적

○ 여신 관련

-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 국책은행으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 기업여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정책금융 공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17. 서민금융진흥원

○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상품 체계 관련

- 2025년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의 공급목표 및 대출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의 금리가 15.9%로 높은데, 금리를 낮춰 상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15.9%로 높아 이용률 저조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업권의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15% 또는 0.2%로 높여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26.10월이면 종료되는데, 금융권의 상시적인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출연금 납부 의무 상시화 필요
- 최저신용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중·저신용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과도한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서민금융 상품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 필요

○ 제도 전반 관련

- 위기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상시화하는 등 청년 지원체계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전채무진단이나 신속채무조정을 내재화하고 연체 후에 신용회복위원회, 최종적으로 법원의 회생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표준 경로 확보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공공기관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기관장이 겸직 중으로 조정 검토 필요
- 65세 이상 고령층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비대면·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로 인해 고령층이 휴면예금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령층이 휴면예금 등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18.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보복적인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2023년과 2024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한 것이 한 건씩 밖에 없는 등 소극적이었음을 지적
-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음을 지적
- 피신고자 등의 공익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 제기 현황 파악 필요 및 보복소송 관련 구조금 지원 실적 저조 지적
-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신청에 대한 구조금 지급률이 12%에 불과하고, 소송 비용 구조금 지원 금액도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
-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사건 관련 권익위의 보호조치 취하 종료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 필요
- 공익침해행위의를 열거주의로 한정하여 내란죄나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신고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지적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무단 막도장 제작·사용 행위와 공공기관 계약 절차 부당 개입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前 기획재정부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
- 前 부패방지국장의 유서에서 지적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불확정 규정 보완에 대한 검토 필요

○ 고충민원 관련

- 고충민원에 대해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옴부즈만 역할을 미이행하는 것임을 지적
- 일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권고를 다수 미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행을 제고 노력 필요
- 국민안전과 직결된 캄보디아 범죄 관련 민원 등은 권익위 내 재외국민 고충전담 기능을 신설해 집중 관리할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행정기관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배제하고 있는 점 지적 및 수사기관을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부처 이송으로 종료된 고충민원을 셀프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의결 필요

○ 권익위 신뢰도 하락 및 유철환 위원장 관련

- 2023, 2024년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청렴체감도가 80.3점에서 69.6으로 10.7점 떨어진 것과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점 지적
- 권익위 위상 추락과 내부 갑질 문제 등 지적 및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거취 결정 필요
- 명품백 사건, 방심위원장 사건 등 편파적 처리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신뢰가 추락했음을 지적
- 전 부패방지국장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권익위의 사건 처리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 필요
-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위증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위원장의 업무 파악 미흡 및 권익위 내부 분열·갈등 조정 필요 지적

○ 징계 및 인사 관련

- 계엄 관련 성명서 발표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계엄 관련 의견 표명한 사무관의 인사 이동에 대한 지적
- 권익위는 독립기관임에도 국정기획위원회 요구로 징계를 철회한 것과 철회 사유가 인사혁신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지적
- 권익위 근무성적평가 관련 백지 서명 강요 등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지적
- 권익위 내부 게시판 인사 비리 비판 글 삭제 지적
- 권익위 내부 제보 언론 유출에 대한 조사 및 공직 기강 확립 촉구

○ 공공조달분야 제도개선 관련

- 조달청 나라장터의 독점 구조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제안 검토 필요
- 공공조달 분야의 전관예우 관련 제도개선 권고 필요

○ 민원 빅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 예측형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범죄 피해 예방 및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주요 정책문제 등을 도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1,2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하는 체계화된 AI 시스템이 없음을 지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 중단된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재개와 화재로 소실된 민원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 필요
-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백업 방식 전환 등 대책 마련 필요

○ 기타

-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이재명 정부에 견제와 감시 역할 필요
- 행정심판의 분야별 처리기간 편차가 존재하므로 복잡한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더 투입할 필요

- 행정심판 인용률이 6%밖에 되지 않은 점 지적
- 금융감독원 내부 감찰실이 연루된 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 권익위의 신속한 조사 등 필요
- 경직된 행정을 완화하고 국민의 현실과 사정을 반영하는 ‘공감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운영실태를 점검·개선하는 읍부즈만으로서의 권익위 역할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필요 및 소수 의견 기재 등 회의록 작성방식 개선 필요
- 권익위가 의결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마일리지 기부 강제하는 것보다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콜110의 소속 적절성 검토 필요 및 타기관 콜센터 대비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및 급여 수준 등 개선 필요
-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관련 상시 전담 점검반 정규조직화 계획 요청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제도·정책 관련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의 대부분이 기초적인 보안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실태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 및 실태 파악 필요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위는 의결서상 시정명령 사항을 추상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에 치중하는 사후약방 문식 행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후제재(과징금)에 치중하기보다 기업의 즉각적인 자진신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고 인지 후 신고가 늦어질수록 패널티를 강화시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통지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기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이드라인을 지금의 기술환경에 맞게 개정 필요
- 개인정보위 차원의 모의해킹 훈련 횟수가 연 1~3회 수준으로 부족하므로 훈련 빈도 확대 필요
- 개인정보 피해보상 관련 매뉴얼, 표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규정 마련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에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KT 해킹사태 관련, 통신과금서비스(소액결제)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각종 스마트 기기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

- 공공기관들이 유출을 인지하고도 통지 기한인 72시간까지 통지를 미루지 않도록 신속 통지 가이드라인 및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 필요
- 국가 R&D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 현재는 AI, 플랫폼 위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을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국민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필요
- 로봇청소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조사 예산 및 인력이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시 대규모 유출 사고 기관이 최고 등급을 받거나 개선 보고서 제출만으로 감점을 상쇄받는 등 현행 평가 체계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페널티 제도 마련이 필요
-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 장치가 미흡하므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를 검토할 필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주문장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유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 자율규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ISMS-P 인증 등 현행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예방 체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활성화 필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거나 가중을 강화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계의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AI 대전환을 위해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 제도 도입이 시급하여 AI 특례 신설 필요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문자-전화와 같은 개별 통지 방식을 의무화하고, 유출가능성 통지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금융, 통신 등 마이데이터 제도가 우선 적용된 분야에서 정보 집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영역별 정보 민감도, 산업군별 정보 특수성, 확대 도입에 대한 분야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검토할 필요
- 현행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 전면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최근 심각한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계획은 부적절하고, 대기업의 보험 최저가입금액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
-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없어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과기정통부의 긴급점검과 같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 해킹사고마다 전담부처가 달라 사안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범정부 보안 컨트롤타워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롯데카드와 같이 회사 매각 준비 중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ISMS-P 인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현장 점검 강화, 모의해킹 등 실질적 검증 절차 도입

필요

- 최근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 ISMS-P 인증 취득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증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과징금 감경 운영 방식과 기준 재검토 필요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
- 불법리당방 개인정보 불법유통 범죄 관련 수사의뢰, 신고 절차 마련, 계좌 동결 등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

○ 개인정보 유출·침해 관련

-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인 월드코인에 대해 과징금(11억 원)을 부과한 이후, 실제 수집된 생체정보의 관리 실태나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AI체험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면밀한 조사와 후속조치 필요
- 최근 해외직구 대상 중국산 IP카메라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수입·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실태 점검 필요
-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 생체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과 유사한 행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 등 실태 점검 실시 필요
-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탐지·분석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 다크웹을 포함한 신속 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관계기관과 국제공조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해외 개인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MOU)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 K-Pop 공연장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위의 직접수행 예산 비중을 늘리고 출연 예산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위원회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보험 및 공제 가입률, 보험료 지급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역시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점을 지적
- 위원회의 소송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법률조직 정비와 자체 소송 수행 역량 강화 필요

○ 증인 김영섭

-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관련, KT가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대응한 느장 대처 문제에 대한 지적
- KT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피해사실 통지를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고객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KT의 무책임한 경영 및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

○ 증인 조좌진

-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케팅 예산과 달리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인지 이후 즉각적인 고객 대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

○ 증인 황성혜

- 구글이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이용자 대화 수집·분석 기술 관련 음성·얼굴 등 생체정보를 무단 추적한 혐의로 2조원 규모의 합의를 진행한 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증인 채정식

- 동일 목적의 앱을 3개(콜마너 1·2·3)로 분할 운영하며 기사들에게 중복적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된 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케어플러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콜 배정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서비스 이용 여부가 사실상의 ‘유료 배차권’으로 변질되어 공정한 배차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CMNP에서 운영중인 콜마너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위치정보 수집 설정을 ‘항상 허용’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앱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대리 기사의 위치 정보가 상시 노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

○ 증인 장유정

- 로보락이 2025년 3월 약관 변경을 통해 한국 고객의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서 직접 수집·처리하도록 명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음성 정보 등이 해외 서버로 전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참고인 김홍광

-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배후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및 중국 조선족 IT 인력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공통사항 관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일부 연구기관장의 부적절한 발언,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 경영 및 중·장기적인 국책연구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실태 점검 및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연구기관에 대해 공공성 지표 중 정책화 및 공개성을 점검·관리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국가전략 과제 등의 협력연구 촉진 당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연구 성과 의원실에 보고 요청
- NKIS에 등록되지 않은 60% 정도의 연구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성 지적
- PBS 제도 개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남은 절차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PBS 제도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처우 수준이 민간 연구기관보다 낮은 상황으로 인해 외부활동에 의존하는 점과 일부 연구기관이 대외활동 상한 규정 미비로 과도한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
- 각 연구기관에서 차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년연장 필요성, 국가직행정공제회 가입 검토, 세종시 반곡동 복합주차타워 건립 준비 상황, 국책연구기관에 적용되는 정치중립의무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견해 질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계약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수의 계약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
- 최근 6년간 대다수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성 지적
- 연구기관별 청년·노인 관련 연구 실적이 저조하고, 두 세대 연구 비중이 불균형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 수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연구회 차원에서 세대정책 연구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획·평가 지표를 두고 있는지 질의
- 기관장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및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노조 추천 위원도 포함하는 등의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 지적
- 해마다 기관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 준비에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무중심형 평가체계, 평가주기를 3년 이상으로 개편, 연구와 경영 분리 평가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지출 인정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 일부 연구기관에서 고용계약제 및 시용제도 운영으로 연구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기관들의 전수조사의 필요성 및 고용계약제 폐지 및 시용제도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적

- 연구기관의 노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장들의 무분별한 노무비 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지적
- 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 파견의 설립목적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및 타 기관과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실효성 대한 의문 제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운영 시 당연직 이사의 저조한 참석률 및 대참현황에 대한 지적
- 전임 이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점 지적 및 신임 이사장 후보의 국정감사 회피 의혹 제기
- 통일연구원의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의 적법성·중립성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부실·편향 문제 등 연구기관 관리 실패 및 연구공공성 훼손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

[국토연구원]

- 전세사기대응 관련 주거정책연구센터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
- 직무대행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을 거부하는 등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지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트럼프 시대 대미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경제연구소 지원 예산 증액의 필요성 지적

[산업연구원]

-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보다 완화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의 시정 필요성 지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

[통일연구원]

- 뉴라이트성향의 연구 의혹, 광복절 부정 및 역사관 문제, 국회해산권 발언 기관장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질타하고, 기관장의 정치적 편향성 및 중립성 위반 등에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결과 철도분야가 통과율 및 경제성이 저조한 상황으로 예비타당성제도를 점검하고, 정시성, 쾌적성, 환경성 등의 편익 및 미래수요 등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주 수요 설

문조사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전시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종합적인 팩트를 반영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여부 검토 필요성 지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은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비정규직 운용방침’을 제정 및 보고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
- 입사 후 2년 초과, 실무 행정·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사업운영원대우 직종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획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감소 인원 83명에 대한 상세내역을 질의하고, 심각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제출 요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과거 수능 출제를 위한 비공개 합숙소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외부감찰에 의해 적발됨에 따라 관련 인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봐주기식 징계로 보이며 수능 출제 합숙소 관련 계약 전반 전수조사 및 내부 감사 체계 및 징계 규정 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간 역할 및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한국교통연구원]

- 한강리버버스가 정시성과 편의성 등을 갖춘 정상적인 교통수단이 될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 지적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연구해야 할 기관이 노조와 반복적 갈등을 빚고 기관의 책무에 어긋난다는 지적 및 기관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질타
- 실내온도와 노동생산성 관련 연구를 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
-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보다 완화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의 시정 필요성 지적
- 퇴직자단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은 계약의 공공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므로 주의 필요성 지적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내부 직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자체조사의 필요성 지적, 징계 남발 및 과도한 해외출장 등 기관장의 전횡 질타

[육아정책연구소]

- 영유아기 사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부과세 면세혜택을 회수하고 소득공제 대상에서 학원비를 제외해 확보한 세수로 영유아 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육아정책연구소장의 견해 질의

VII 시정·처리 요구사항

1.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분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외 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외 사적지 관리와 관련된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며, 체계적인 국외 사적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한·중 독립운동 사적지 공동보존 프로젝트 제안 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삼청장이 국가 사적으로 복원되어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복원·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 광복군 창설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할 것
- ‘보훈돌’ 사업의 지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
- 독립유공자 서훈 평가 체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를 공개할 것
- 미성년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등 유형별 특성에 따른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조봉암 선생에 대한 서훈 수여 및 이상룡 선생에 대한 서훈 재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윤희순 의사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된 공적을 반영하여 훈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
- 독립유공자 훈장 미전수자 전수조사 및 전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 임시정부와 관련된 연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정할 것

- 친일재산 환수를 통하여 순애기금 재원을 적극 확보할 것
- 민주유공자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보훈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 공무원이 순직이나 공무상요양승인 인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자동 등록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를 검토할 것
- 군 복무 중 지뢰 사고 시 해당 위험물의 설치 주체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
- 5·18민주화운동에 기여가 큰 공로자도 5·18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 적용 배제 결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에 대해서도 뇌우침 심사를 통하여 재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보상 심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기존 판례 등을 분석하여 보훈보상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
-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연령 제한 없이 보상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액을 현실화할 것
- 보훈급여 부정수급 감독체계를 재점검하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며, 환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보훈병원 전공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내 한의 진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구매 계약에 대한 개선방

안을 마련할 것

- 인천보훈병원 간호직 결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특수임무공로자 등 비상이유공자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경기 남부권 보훈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강원지역 내 보훈요양시설,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내 수익시설 운영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
- 민간병원의 위탁병원 지정 기준 강화 및 위탁병원 운영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병원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의료기관에서 ‘先進료 後청구’ 하는 방식의 보훈 의료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병원 표준계약을 개선할 것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가 경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이 보훈특별고용 고용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대부지원 제도 중 긴급자금 지원이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점검할 것
- 대부지원을 받은 보훈대상자의 채무를 일정 요건하에 탕감 또는 재조정하거나 저리 전환, 상환 유예기간 확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분할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보훈단체 등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이동지원 사업 지침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전향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민간 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
- 4·19혁명 관련 공법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 부정 의혹,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
- 4·19민주혁명회의 임대 사업과 관련된 국가보훈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구조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단체 회원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로서 노력할 것
- 보훈단체 내에서 순직군경 유족이 순직군경 관련 예산 및 사업에 대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다수 보훈단체가 전체회원이 아닌 '대의원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묘지에서 구입하는 조화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고, 조화보다는 생화 또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환경성 조화를 구입하도록 권장할 것

- 국립묘지 안장·이장 증가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 국립묘지 공무원 근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및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하여 안장심의위원회의 영예성 심사를 검토할 것
- 전체 국립묘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물고임 등의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연차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에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미혼인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중 명예퇴직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경찰, 소방공무원 외 다른 유형의 제복근무자도 장기 재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수임무공로자를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독립기념관장의 근태, 업무추진비 사용, 독립기념관 사유화, 특정 종교 편향 의혹, 수장고 특혜, 부적절한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등을 포함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
- 독립기념관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 안전환경부장이 공사업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 및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및 관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한 독립기념관장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 보훈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88골프장 매각 절차를

관련 용역 결과 및 매각가 기준 연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

- 모두의 보훈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 법률자문 내용을 자문변호사 동의 여부와 무관히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계약을 수정할 것
-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최종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일제강점기’ 대신 ‘대일항쟁기’ 등의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활성화,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국가보훈부 중심의 용어 표준화를 추진할 것
- 88관광개발에 퇴역 군인이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 보훈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업 확대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보훈병원 전공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내 한의 진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인천보훈병원 간호직 결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내 수익시설 운영을 수익계약 방식에서 일반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
- 환자 안전 위협, 성희롱, 음주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하며,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3.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시설물(유아놀이방, 평화누리 전시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추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것
- 특정 종교에 편향된 독립기념관장의 행사를 중단할 것

4. 88관광개발(주)

-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이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88골프장 국가유공자 혜택 제도를 개선할 것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사 파견인력을 보충할 것
- 테러방지 법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줄이고 국무총리실의 권한을 늘리는 한편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다른 부처에 비해 미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용일자, 장소 등 세부항목을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개선할 것
- ODA평가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ODA통합정보포털 고도화를 통해 사업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ODA사업 관련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ODA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조세심판의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과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제도, 우선처리제도, 전자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부패예방추진단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조직 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집행실적 통계 관리를 강화할 것
- 계엄 관련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복무 점검이 실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 지속가능발전의 실제적 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처별,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

- 공공기관들의 헐값 자산 매각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
-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임에도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기 중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반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보좌역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시정명령·권고 불수용 행정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안보체계 관련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하므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와 산업통상부 간 갈등을 조정할 것
- 110 국민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비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 공공부문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결과를 점검할 것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공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할 것
-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의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기타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쟁점 현황,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할 것
- 의료기관들의 상급병실 편법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

- 실손보험 전산화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인종, 종교, 이주민에 대한 차별·혐오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
-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펌프를 전국적으로 늘리고 공동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처별로 각각 시행 중인 명절 할인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공계의 연구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강화할 것
-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강화할 것
- 스톱킹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인력 보강을 추진할 것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고액보증금 예치제도의 대안 제시, 취업 가능 체류 자격 부여, 사업장 정기 감독과 권리구제조치 등을 검토할 것
-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피해액을 추산하고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온라인 압포 근절을 위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할 것
-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
-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 은닉 수단 등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응

책을 마련할 것

- FA-50 방산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전력화와 수출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보이스포싱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진행할 것
-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더스윙' 기업이 범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선정 취소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새마을금고 감독권의 금융위원회 이관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구글의 고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내부거래 등 매출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과세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형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
-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 할 것
-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사한 성격의 기구임에도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을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로 통합할 것
-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규제개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할 것
-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지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력할 것
-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기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가 주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평택 주한미군 관련 법률의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상시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재추진 검토 등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동남권 투자은행 신설에 대해 검토할 것
-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제연구원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할 것
- 가상자산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적부터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범정부적 TF를 구성할 것

6. 공정거래위원회

-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
-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와 배달라이더가 협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추진할 것
- 30일이 넘어가는 정산주기로 인하여 선정산 대출서비스 전문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관련 입법을 통하여 정산주기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앱 관련,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공공 배달앱 활성화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한 상황이므로, 배달앱 수수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셀러월렛을 통해 빠른 정산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고,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일 단축, 단체협상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임을 광고하면서,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
- 미국에서는 중국 TV 제조사를 상대로 과장광고 혐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TCL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검토할 것
- 중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

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재할 것

- 통신사들이 할인티켓 판매과정에서 할인비용을 배급사 등에 전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
- 아사히 카세이 사건에 대하여 1)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와 2) 현재 조사진행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설탕, 밀가루 등 가공식품 원재료 분야에 대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금융권 담합조사에 대한 제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감소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고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행위와 관련, DAXA 및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
- 리니언시 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의민족이 할인행사(푸드페스타)에 입점업체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불공정 착취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발표 이후에도 예고 없이 거리기준이 변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검토할 것
- 배달의민족이 도입하는 로드러너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쿠팡의 끼워팔기 관련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스포츠패스 관련 끼워팔기에 대해 검토할 것
-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대리운전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확

인·조치할 것

-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콜화물, 탁송 등 업종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할 것
- 구글이 국내 5개 게임사에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 MS가 윈도우 OS에 코파일럿 키를 기본탑재하거나 M365에 코파일럿 기능을 추가한 행위에 대해 끼워팔기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CJ프레시웨이가 기부금을 주는 조건으로 식자재 납품을 하고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기부금을 회수한 사례와 같은 리베이트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중국셀러들에 의한 한국셀러의 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 무단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실태조사,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검토, 구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 등 검토 필요
- CP 제도의 기업 참여도를 높이고, CP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배달의민족의 우리가게클릭 자동입찰제와 같이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현행법은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아닌 경쟁제한적 효과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우아한형제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하여 딜리버리히어로가 현금수익과 주식가치 상승의 이중 이익을 얻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배달의민족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것

- 구글의 불공정 담합, 인앱결제 방지법 무력화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할 것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항공시장의 공정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민간항공사의 재량에 맡겨놓기 보다는 공정성 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한수원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PQ(입찰심사)기준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수행실적의 평가 기준에 특혜가 있는지, 또는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유사용역실적 제한으로 3개사 외에 입찰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기준에 상수도점검정비 실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고속도로공사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터널운영관리용역 입찰에 특정 5개 업체가 57%, 46%를 수주하고 있으므로, 담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쟁사 간의 자금 거래로 상표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장지배력 이전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네파의 상표권이 K2로 이전 시 기업결합심사 또는 경쟁제한 우려 거래로 검토할 것
- 대한제분의 기술탈취, 하도급법 위반, 상표권 침해,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검토할 것
- 해외수주사업 관련 국내기업 간 하도급계약에서 외국 중재 또는 재판관할 조항이 중소기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집중 점검할 것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탈취 등 법 위반의 고의성 인정 시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원사업자가 다른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현대건설의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금 지급, 하도급법 위반 및 초과 공사비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
- 납품단가 연동제 홍보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면교부 의무를 회피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연동제 포기를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전면 의무화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CA이엔씨(주)가 '고양철문 복합물류 신축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당감액 행위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조치할 것
-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상대 서면미발급(계약서 부존재, 카톡으로 위탁) 등 하도급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원청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악의적 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기한 제한을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또는 특정 불법행위(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팀프레시 운송료 미지급 건에 대한 구제책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반복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
-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시 정액수수료를 적용하여 손실을 떠넘기고 있으므로 정률수수료 도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주)명륜당, (주)해가족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알선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자금 대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
- 더본코리아의 오너리스크, 문어발 다브랜드 전략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굽네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한 외압으로 조사가 지연되었는지 살펴보고, 신속히 조사하며 피해 가맹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전체 납품·입점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뿐만 아니라, 중소 납품업체, 농수축산물 납품업체 상황도 별도로 파악하고 주간 거래대금과 지급액 규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동향보고의 실효성을 높이며,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개편함과 동시에 그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서 간 비교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할 것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가 가맹본부에 맡겨져 있어 동의율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동의 절차를 실질화·공정화·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포인트 적립, 일정 횟수 이용 시 1회 무료 등의 판촉 행사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사전동의 또는 별도계약 여부를 확인할 것

-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넘어 재계약조건·영업시간·차액가맹금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건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점주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므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맹본부들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맹점주 대상으로 가맹계약 10년 초과 사유로 계약해지를 당연하게 요구받고 있는지 현황 파악할 것(박상혁 의원, 서면질의, 10월 28일)
- 가맹본부의 오톨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갱신 주기를 개선할 것
- 저가 커피 브랜드의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으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커피 가맹점 간 거리제한을 포함하는 자율규약 등이 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납품받는 물품의 원가조차 모르고, 가맹본부는 그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내역과 차액가맹금 의무 공개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할 것
-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
- 유통 분야 대금 정산주기가 빠르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거래유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
-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납품대금 정산 주기 합리화는 타당하나, 정산주기 단축은 메이저 유통업체의 독점 강화 및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매입 거래의 정산주기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면밀히 검토할 것

- 아쿠쉬네트 코리아가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비알코리아(주)의 판촉행사, 해피포인트, 인테리어 강제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아디다스의 어카운트들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것
- 교촌에프앤비의 원재료 공급 차질 및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갱신거절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더스윙이 가맹본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영업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속히 조사할 것
- 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에 대해 검토할 것
- AI·반도체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일인 관련자 지정제도의 개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해명절차의 명확화 등 실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 한도 상향, 해외투자 비중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
- 효성이 IMS모빌리티에 대해 투자한 것이 공정위 최종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할 것

- 태광그룹 자녀들의 T2PE와 흥국리츠운용 지분 소유와 사업기회 제공 의혹에 대하여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사업기회 제공행위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서희건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
- KT IPTV 광고 무상 제공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문제 확인할 것
- 상표권 사용료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굽네치킨의 자녀회사 일감몰아주기 사건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 천안기업이 유진기업 보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계열사들에 해당 건물을 임대차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기업집단 사조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것
- 일부 대형 연예기획사가 케이팝 공연티켓의 소유자가 예매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것
- 추모공원 등 봉안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
-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쿠팡파트너스의 납치광고 관련하여 실태 점검,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OTT 구독 관련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 실태조사, 중도해지 환불 기준 및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
- OTT 시장의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OTT 이용자 약관 검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식당테크 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심화되지 않도록 표준약관 제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상조업체 총 선수금이 10조원을 초과하나 현행법은 상조업체 선수금의 50%만 규제하고 있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바, 금융당국의 지원을 통해 공정위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6개사 중 70개사는 선수금을 통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선수금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 대상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건전성 저해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보람그룹 의결권 편중 해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미이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교촌치킨의 중량감축 및 원육 변경 문제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대처방안 마련할 것
- 중요 원재료 고지 의무 재도입, 프랜차이즈·외식업까지 고지 의무 확대 등 현행 슈링크플레이션 규율 범위를 확대할 것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조합 해산과정에서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생협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지배적 경영자로서 권한을 행사함에도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거대 생협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오너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퇴사 등으로 노동자들이 주식매도 의사를 밝히면 매수에 소극적이며 일부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할 것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타 조합 상조회 운영에 관여하며 공제사업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할 것
- 헬스장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대책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역류방지쿠션이 영유아의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아용 섬유제품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기준을 개정할 것
- 결혼식장에서 최소보증인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각 보증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
-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에도 위약금 부과 필요하므로 관련 약관에 대해 실태조사할 것
- 쿠팡 추석페스타 최대 50%할인은 상품가격이 공식 홈페이지보다 2배 부풀려지는 등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조사에 착수할 것
-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일부 구독서비스 업체의 경우 서비스 가입과 갱신은 쉽게 지원하는 반면, 해지는 매우 어렵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것
- 공유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자동결제, 취소·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문제, 명확한 표준약관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고 규제를 마련할 것
- 대한항공이 개조한 좌석의 규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항공 소비자의 권리 축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티켓베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압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근거법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추진할 것
- 공정위 차원의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직-퇴직자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내부감찰팀을 강화할 것
- AI 알고리즘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내 데이터 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등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시장분석 전담팀 신설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경받은 후에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의의결을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동의의결제도가 사건 처리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신청부터 시정방안을 내는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이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거쳐 철저히 대응할 것
- 과징금 부과 전에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한 과징금을 제시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사건 유형별 처리기준·심사 프로세스의 구조개편 병행하는 등 조사·심의 과정을 효율화할 것

- 공정위가 실적쌓기를 위한 제재를 남발하는 등 무리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조를 탄압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
- 건설노조 관련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1건에 대한 상고취하 및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3건 패소 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OTT 구독 중도해지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도기준 마련되면 재심의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
- SK렌터카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이중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여부, 해당 계약 변경 과정이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강압적 합의 및 계약이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마이리얼트립’이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및 직권 조사를 검토할 것
-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공지로 수락시간,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조 공제조합에 대한 공정위·소비자원 출신 인사 전관예우,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

7.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조속히 임명할 것
-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다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강력한 피해구제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글로벌 OTA 여행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
- OTA 여행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의 신속성·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TV홈쇼핑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를 위해 간이조정 절차 등 신속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 반복 발생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역류방지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할 것
- 테슬라 배터리 오류(BMS a079)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기관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여행사 관련 피해구제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행계약 표준약관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
- 민간자격증이 범람하는 상황으로, 청년들을 위한 민간자격증 피해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추진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할 것
- 편의점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된 가맹 분야 분쟁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9. 금융위원회

- 금산분리 규제 유연화 논의에 앞서 기업 사내유보금의 규모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투자·배당·임금 등 실물경제로의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재검토하고, 내부 전문인력 중심의 조사·점검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체계를 금융당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예금자 보호 체계의 통합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
- 프린스그룹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금세탁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자금 동결·압류,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등 실효적인 금융제재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
- 금융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성과급 환수(클로백) 등 보수체계 개선을 포함한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휴면예금 출연과 구별되는 사회공헌활동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하는 등 은행권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와 관련하여, 부동산 PF 위험도 감소 추세와 업권의 재무 여건, 서민금융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시점 유예 등 탄력적 운영과 적립률 상향 시기·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할 것
- 상호금융의 지점 통폐합(농·축·수협, 신협·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상

향을 고려하고, 자본규제 조정이 기업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며, 일괄담보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 부동산담보 외에 투명하고 안전한 주식담보대출 제도화를 금융권 자율혁신 과제로 고려할 것
- 국책은행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해 용도관리·사후점검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법령에 따른 조치(임직원 제재·과태료 등)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은행 담보물 평가와 관련된 상위법과 감독규정 간 정합성 문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리할 것
- 금융소외계층 및 비수도권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역자금 역외 유출 완화를 위한 금융정책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가능성, 대출 총량 관리 하 경쟁 유도 방식 재설계, 영역별 경쟁 촉진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쟁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현황과 향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
- 금융 AI 서비스 도입·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상담 인력의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성장펀드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유사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 방안을 검토할 것
- 정책펀드의 지역 균형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펀드 수익률 제고 및 향후 정책펀드의 합리적 운용 원칙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복잡한 인증·검증 절차의 간

소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 결합 확대 및 데이터 활용 규제를 재검토하며, 합리적 과금 기준을 마련할 것
- 향후 정부 주도 소비진작·금융지원 사업 추진 시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부담과 이자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집행 일정 관리 및 비용 분담 원칙을 명확히 마련할 것
- 선정산 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 구조와 위험 분담 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회수 극대화 원칙이 공공성 확보 및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를 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예보료를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시 금융업권 및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투명한 논의구조를 구축할 것
- 금융위원회는 산하 유관기관과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장들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산하 유관기관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도 감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 사장(전임)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정책금융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인건비를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로 총인건비 예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2024년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 조직적 은폐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
-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F4회의의 공식 기구화 여부 등을 관계기관 등과 논의하여 검토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정에서 금융규제가 단기적 수요 억제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기능을 명확히 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의 금융규제를 운용함에 있어 단기적·확일적 규제 변경을 지양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추진할 것
- 전세퇴거자금·빌라·중도금대출 및 재개발·재건축 관련 금융에 대해 LTV 40%를 일률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 부담과 사업 추진상 자금흐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을 감안하여,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부작용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및 공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의 조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세보증대출 심사기준에 전세사기 예방 요소가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점검할 것
-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신탁사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동산 금융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의 기본 원리에 따른 일관된 DSR 적용을 통하여 은행권 자금이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등을 고려한 LTV·DSR 차등 운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
- 지분등기 주택에 대한 담보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개념을 반영한 통일적인 여신 실무 지침 마련 여부를 검토하

고, 금융회사 간 상이한 담보 판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점검할 것

- 국내 마이너스 통장 잔액과 신규 개설 건수가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영끌 빚투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므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 체크카드 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신용사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 수혜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부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도약기금 및 배드뱅크 운영 과정에서 캠프 등 공공기관 보유 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며, 법정 출연 기간 종료 후 기금 설립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서민금융 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
- 금융위원회는 공공보증기관을 포함한 연대보증 잔존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중소기업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저회수 연대채무의 규모 및 처리 실태를 점검할 것
-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이원화하여, 고신용자는 현행 연소득 기준을 유지하되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은행권이 중저신용자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은행권 채무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의 표준화, 공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항목 반영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

-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가입자 수요 예측 방식과 우대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채무부존 재확인소송 제도의 악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이스포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 등을 검토할 것
-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회사 부담의 과도한 전가를 완화하기 위해 페어펀드와 같은 기금형 보상제도 도입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구조를 검토할 것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현행 출연구조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재원 보완 방안을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마련할 것
- 대부업체의 지자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대부업 행위에 대해 동일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도록 감독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쪼개기 등록을 통한 과잉 대출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1,2금융권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대체거래소 15% 룰의 도입 취지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량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거래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한국거래소 경영협약 필요성 및 감독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대체거래소 관련 거래량 제한 규제에 대해 시장 영향과 경쟁 촉진 효과를 고려하여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과 관련한 주문배분체계(SOR)의 운영 실태를 점검·보완하여 투자자 신뢰 저하 요인을 해소할 것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을 지닌 거래소·대체거래소의 참여가 샌드박스 제도 취지와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 성과 및 공적 기여도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가 기준과 평가체계를 개선할 것
- 혁신금융서비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초기 혁신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후 단계적 시장 개방과 함께 혁신 성과 및 실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허가 및 배타적 운영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는 IMA 인가심사 기준에 사회적 신용(금융소비자 보호, 사고시 배상비율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것
- 국내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서비스의 온라인화 등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통합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 사모펀드에 대해 임원 보수, 투자전략, 투자금액, 수익률, 유동성 등 핵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전·사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감독 제도를 마련할 것
- 사모펀드의 경영 관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자산유동화·단기사채 발행 등에 대한 사전·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PEF 규율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회생절차 직전 전단채 발행의 사기 전단채 해당 여부 및 형사처벌 방법을 검토하고, 회생절차를 활용한 엑시트 이후 펀드 해산 방지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업무집행사원 자격심사(「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12항) 및 동 조항상 필요한 조치의 범위, 기술·중후장대 산업(AI·조선 등)와 프랜차이즈·이커머스·B2C 업종에 대한 차등적 진입 규제 마련 등을 검토할 것

-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사기성 전단채 발행과 관련하여 과거 LIG 동양사태를 참고해 MBK에 대한 형사·행정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제재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249조의15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조치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등록취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및 주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불공정거래 사건이 검찰에 이첩되더라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행정제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를 검토할 것
- 언론 종사자 및 IR 대행사 연루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출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언론사 자율규제 강화 대책을 검토할 것
- 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의 단순종결 처리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증액 등)하여 신고가 조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 네이버 - 두나무 합병설과 관련하여 보도 경위와 보도 전 주가·거래량 급변의 원인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당국 차원의 신속한 사실조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공소시효 제도 개선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
-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안내 및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것

- 한국증권금융의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 기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설계할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 등 보완장치를 함께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 및 자본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신주 발행에 준하는 규율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패키지로 연계 검토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추진 방향을 보고할 것
- 밸류업 정책이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기반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세이프하버(Safe Harbor) 방식 등 자발적 공시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권 성평등 임금 실태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시 항목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해외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국내 직접판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제도 추진 시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염두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과징금 감경 기준이 제재 완화·감액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운용에 주의할 것

-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준 상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축소가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이 기업 부담 완화 논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비상장사 기준 환원·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유예 철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할 것
-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되, 악성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면서도 재무정보 공개로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
-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한편, 특수관계자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병행하고 외국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징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미이수 및 특별실무수습의 형식적 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미지정 수습 회계사 인력을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IFRS 18 도입이 국내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 및 투자자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자기자본 요건, 참여 주체 구조 등 안정성 확보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 설계를 검토할 것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시 은행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빅테크·핀테크는 기술 파트너 역할로 한정하는 한편, 샌드박스 방식의 단계적 도입과 이자 지급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스테이블코인·RWA·STO 등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등 통제 장치를 전제로 금융기관·기관투자가·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인 신규계좌 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추진기간·책임자를 포함한 이행 로드맵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 메신저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 스캠·초국가범죄와 연계된 고위험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금 유출입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진할 것
- 실명계정 다변화로 인한 감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구조하에서 원화 입출금 자금 흐름에 대한 일원화된 모니터링·감독 체계를 우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앞서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와 법적·기술적 한계를 점검할 것
- 원화거래소 연계 은행 및 국내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등 의심 거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
- 고팍스 '고파이' 피해자에 대한 상환이 이행되도록 바이낸스의 상환계획 제출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코인 연계 카드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및 해외 코인 연계 카드의 국내 활용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검토할 것

-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시험이 보험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
- 건축자재의 화재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적 차등화 및 중소형 사업장을 포함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
- 보험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이전제도의 경직성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불안정 심화로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보험료 대납 규제가 사회공헌 목적의 보험료 지원이나 청년 대상 무료·지원형 보험 도입까지 제한하고 있어, 공적·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청년 안전망 확충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
- 듀레이션갭 규제로 공시이율이 하락하고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총괄 조정자로서 보완할 것
- 보험상품 설계를 위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다단계 PG 구조에서 하위가맹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G사의 하위가맹점 관리·사후조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하위 PG에 대한 재무건전성·불법행위 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PG 정산자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등 특정 기관에 대한 독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VAN을 지정하여 공공 PG 기

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모의해킹을 금융보안원 상시평가의 기술적 보호조치 중 취약점 점검 항목에 반영 및 평가하며, 현장점검을 적극 검토해 시범실시 및 성과 검증 후 정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권고사항을 실제 점검·평가 항목에 반영하며, 보안 사고 예방과 초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회사 정보보안 감독체계를 정비할 것
- 카드사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추진하고, 그 추진 경과와 마련된 대안을 공유할 것
-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와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 금융감독원

- 은행권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에 대해 표준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할 것
-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기준 거절사유 표준화 및 운영실적 공시를 강화할 것
- K-배터리 지원정책에 역행하는 주채무계열 평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정책과의 괴리, 업계 특수성 미반영, 평가지표의 비합리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에서 특수 물건에 대해 담보가치를 산정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도록 감독할 것
- 은행권 대출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
- 친인척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DB 등록 전산통제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시 교육세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
-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금융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은행 지점 단말기 원격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 전세사기 사례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 제2금융권에 차등적용 중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과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등 제2금융권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권 담보물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올빼미 공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시문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할 것

- 은행업권의 법률자문비 공개 등 투명한 자문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종·충청권 명의도용 전세사기대출 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티몬·위메프 관련 선정산대출로 인한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회사 임직원 주도의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
- 은행이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대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감독할 것
- 공동정상화펀드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은 부실이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자산운용사의 현금성 혜택이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점검할 것
- 사모펀드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검증을 강화할 것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확대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할 것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의 단순종결 처리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증권사의 고위험 파생상품 권유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할 것
- 고령투자자의 합리적인 시장 접근과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고령 투자자 보호정책을 평가하고 고령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투자증권의 CLO 펀드 등 한국시장에 위험을 전이할 수 있는 상품에 대

해 면밀하게 관찰하여 대응할 것

-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의 분쟁 조정비율을 다시 정하고 운용사의 배상방안을 마련할 것
- IMA 심사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등의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MBK의 복잡한 펀드 구조와 인수기업 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MBK의 롯데카드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할 것
- 국회에서 현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개선 법안을 추진 중이나, 법개정전 선제적으로 RSU 관련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매도리포트가 거의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리서치 기능의 제도화 등 애널리스트가 객관적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관행적으로 관계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와 감독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회사의 다태아 보험 인수 건수가 늘지 않고 있으므로 단태아와 다태아 간 인수기준 형평성 제고, 실효성 있는 사후 점검방안 등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
- 자동차보험정책 입안시 보험료 인하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할 것
- 간병인 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자기계약금지 대상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하고, 보험중개사 및 대리점의 자기계약금지 위반을 철저히 단속할 것
-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관련 기관 의견 반영, 소비자에 대한 미권고 치료 정보 공개 등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을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변액저축성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소비자 교육 미흡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마련을 검토할 것
- 의료자문 책임 강화 정책을 마련할 것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영업건전성과 소비자피해지표 등을 상시 관리감독할 것
- 대리운전기사가 카카오톡모빌리티와 개별 대리운전업체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볼 것
-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자산운용사의 ETF 광고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등 비대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시 사전교육 등 국내 파생상품 거래시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사망보험금 관련 금감원 민원을 재조사할 것
- 새마을금고의 높은 부실률, 부실 공시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권 이관을 논의할 것
-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모니터링할 것
- 가상자산 감독체계와 관련하여 상시감시, 수사 공조를 강화하여 자율규제로 인한 취약점을 보완할 것

- 금융회사의 FDS 시스템 고도화, FDS 탐지 정보 공유, 전담조직 확충, AI 활용 등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DS 탐지 기준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용을 의무화할 것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이의제기 조치 기간을 금융회사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
-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직접 결제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포상제도를 실질화하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협조하여 신고가 이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배상완료 비율이 10%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상조회 등의 차입·적립금 모집행위가 사실상 '비금융기관형 금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합동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카드사 정보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CISO 전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금융광고 차단을 위해 광고주 인증, 자동차단 API 설정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센터의 성과가 미미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렌탈채권과 통신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추심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보호 투자비율 기준 마련 등 금융회사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법인보험대리점이 체계적인 정보보안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IT검사 업무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현행화하여 점검을 제대로 할 것
- 사모펀드의 투자계획을 금융당국 및 투자자들이 보고 받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출금지연, 사기범 계정 지급정지 및 환급 등을 추진할 것
- 롯데카드 웹로직 서버 누락에 대한 제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카드사 관련 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 빗썸 임원의 사택 특혜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빗썸의 테더 급등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감독, 거래소 유동성 관리, 자동청산 시스템 점검 같은 리스크 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바운드리스 코인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상장심사 기준 공개, 공시실질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선 백도어 해킹 관련 보안 규정을 개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 금융회사들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와 평가항목 조정, 자율진단의 책임성 확보 등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인원을 확충할 것
- 공정하고 투명한 연수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복현 전 금감원장 관련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법률자문 계약시 특정 로펌에 대한 특혜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 배분 체계를 마련할 것
- 금융권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간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를 활성화할 것
- 기업은행이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의 책임자를 부행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제재심을 실시할 것
- 은행 점포수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소외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바일상품권 환불 등을 통한 자금세탁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직원보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11. 예금보험공사

- 서울보증보험 경영권 지분 매각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 방안을 보고할 것
-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을 제출할 것
-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시 금융업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노력할 것
- 캄코시티 관련 채권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舊 예보기금(現 예보채상환기금)의 자금지원을 통해 인수한 예금보험공사 사옥 등 자산이 장기간 매각·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실보험회사 정리방식과 관련해,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인 런오프 제도 및 기존 계약자 손실분담 제도 등을 검토할 것
- 부보금융회사의 선제적 부실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간 금융회사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시 사전적인 대응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안정계정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입법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할 것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손실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 예금보험공사에 파견검사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처우 수준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상환을 위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동반성장협력대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주기적 재심사, 지원기간 상한 설정, 신규 참여기업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해외은닉재산 회수 관련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1개월 이내에 국회에 서면 보고할 것

12.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지가 공시지가 대비 저가 매각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이 적정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유농지의 약 95%가 기존 계약자에게 재계약되고 있으므로, 국유농지의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위해 홍보방식과 운영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공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 수행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
- 미활용 폐파출소를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が必要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연체채권 관련 시효연장 기준을 개선할 것
- 새도약기금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새도약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업권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유인책을 추가 강구할 것
- IMF 외환위기 당시 인수한 장기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리계획을 보고할 것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세물건에 대한 공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매절차에 대한 권리행사 안내 등 실효적인 임차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자산의 매각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비드시스템 입찰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체납국세 위탁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지방 사업장 지원을 강화할 것
- 신속한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
-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 실적 확대를 위해 인수대상을 동산담보권에 서 공장저당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옹동학원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
- 시설관리 민간용역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을 보고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인재 채용 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급 인사의 적체 및 지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

- 맞벌이 부부의 정책모기지 등 이용 시 소득요건에 대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담당 정부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할 것
- 금리인상 없는 유한책임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층,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정책이 아닌 데이터와 시장에 기반한 장기정책을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
- 임차인이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을 결합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특례구입자금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것
-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하여도 동일기업 대상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 전세보증의 경우 일반 전세보증 대비 높은 보증사고 발생률과 절반 수준의 낮은 채권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과 청년 전세보증의 공급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보증 문제를 해결할 것
- 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가운데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조정할 것
- 위탁보증 심사절차 개선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현황을 집계하고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과 업무질의 회신 사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
- 임대차계약체결 유의사항 설명서에 선순위채권이 있을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보증취급 시 소액임차인 기준 관련 주택임대차법 관계법령의 내용을, 특히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개선할 것

- 전세보증 선순위요건 도입으로 인한 전세사고 위험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주택가격 변동을 감안한 월지급금 선택형 도입을 검토하고,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지급금을 높이고 공사의 대위변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공사의 직접지급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할 것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매각 외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통한 상환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요건 정비 및 자녀세대 대상 사회적 캠페인 차원의 홍보를 실시할 것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연금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귀농·귀어·귀촌, 인구감소지역 이주, 장기요양 목적의 이주 등을 실거주 예외사유로 포함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현실화할 것
- 지역인재 채용에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것
- 공사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므로 부채비율을 관리할 것

14. 신용보증기금

-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 및 부가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를 고려할 것
- '25년 ~ '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신용보증 지원계획이 '25년 78조원에서 '29년 74조원으로 축소하는데, 신용보증 축소 계획을 재검토할 것
-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신보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은행과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초과하는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딥테크 기업의 창업초기 및 R&D단계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이커머스 정산지연 특례보증의 상환 유예기간 추가 부여 등 지원 방안을 정부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보험료지원 협약 등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비전을 마련할 것
-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선투자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할 것
- 타기관 대비 저조한 보증연계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한국산업은행

- 명륜당 대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
- 주채무계열 평가시 재무구조평가위원회에서 배터리 산업의 미래성, 산업정책 방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중소기업은행

- 기업은행 주가 부진 관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차등배당·분기배당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부당대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기업은행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인건비 예외 설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기업은행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신속히 도입할 것
-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 대책 필요, 또한 정책금융 공급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대출 과정에 정책프로그램 연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17. 서민금융진흥원

- 2025년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의 공급목표 및 대출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의 금리가 15.9%로 높은데, 금리를 낮춰 상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15.9%로 높아 이용률 저조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업권의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15% 또는 0.2%로 높여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26.10월이면 종료되는데, 금융권의 상시적인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출연금 납부 의무를 상시화할 것
- 최저신용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중·저신용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과도한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민금융 상품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 위기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상시화하는 등 청년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 65세 이상 고령층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대면·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로 인해 고령층이 휴면예금을 찾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령층이 휴면예금 등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8. 국민권익위원회

-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구조금 지급률 저조, 지원 금액 현실화 등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무단 막도장 제작·사용 행위와 공공기관 계약 절차 부당 개입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할 것
- 前 기획재정부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이해충돌 위반 여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前 부패방지국장의 유서에서 지적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불확정 규정 보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일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권고를 다수 미이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권익위 내 재외국민 고충 전담 기능을 신설해 집중 관리할 것
- 권익위 내부 제보 언론 유출에 대한 조사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
- 조달청 나라장터의 독점구조 및 공공조달 분야의 전관예우 문제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국민신문고의 민원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백업 방식 및 자료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심판의 분야별 처리기간 편차가 존재하므로 복잡한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더 투입할 것
- 금융감독원 내부 감찰실이 연루된 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것
- 각 부처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운영실태를 점검·개선할 것
- 회의록 공개 및 회의록 작성방식을 개선할 것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콜110의 소속 적절성 검토 및 상담사 처우를 개선할 것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의 대부분이 기초적인 보안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실태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감독하고 실태를 파악할 것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위는 의결서상 시정명령 사항을 추상적으로 적시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에 치중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후제재(과징금)에 치중하기보다 기업의 즉각적인 자진신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고 인지 후 신고가 늦어질수록 패널티를 강화시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기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이드라인을 지금의 기술환경에 맞게 개정할 것
- 개인정보위 차원의 모의해킹 훈련 횟수가 연 1~3회 수준으로 부족하므로 훈련 빈도를 확대할 것
- 개인정보 피해보상 관련 매뉴얼, 표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규정 마련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
- 각종 스마트 기기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
- 공공기관들이 유출을 인지하고도 통지 기한인 72시간까지 통지를 미루지 않도록 신속 통지 가이드라인 및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
- 국가 R&D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에 대해 ISMS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현재는 AI, 플랫폼 위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을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국민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것
- 로봇청소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조사 예산 및 인력이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시 대규모 유출 사고 기관이 최고 등급을 받거나 개선 보고서 제출만으로 감점을 상쇄받는 등 현행 평가 체계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페널티 제도를 마련할 것
-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 장치가 미흡하므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를 검토할 것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주문장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유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
- 자율규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ISMS-P 인증 등 현행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예방 체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를 활성화할 것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거나 가중을 강화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계의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AI 대전환을 위해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 제도 도입이 시급하여 AI 특례를 신설할 것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문자-전화와 같은 개별 통지 방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금융, 통신 등 마이너데이터 제도가 우선 적용된 분야에서 정보 집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영역별 정보 민감도, 산업군별 정보 특수성, 확대 도입에 대한 분야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마이너데이터 제도를 검토할 것
- 현행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 전면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최근 심각한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계획은 부적절하고, 대기업의 보험 최저가입금액 수준을 현실화할 것
-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없어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게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과기정통부의 긴급점검과 같이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해킹사고마다 전담부처가 달라 사안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범정부 보안 컨트롤타워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롯데카드와 같이 회사 매각 준비 중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할 것
-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ISMS-P 인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현장 점검 강화, 모의해킹 등 실질적 검증 절차를 도입할 것
- 최근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 ISMS-P 인증 취득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증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과징금 감경 운영 방식과 기준을 재검토할 것
- 불법리딩방 개인정보 불법유통 범죄 관련 수사의뢰, 신고 절차 마련, 계좌동결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수행할 것
-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내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인 월드코인에 대해 과징금(11억 원)을 부과한 이후, 실제 수집된 생체정보의 관리 실태나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할 것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AI체험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면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
- 최근 해외직구 대상 중국산 IP카메라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수입·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
-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 생체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과 유사한 행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 등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
-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탐지·분석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 다크웹을 포함한 신속 탐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관계기관과 국제공조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해외 개인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MOU)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K-Pop 공연장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위의 직접수행 예산 비중을 늘리고 출연 예산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위원회의 소송 법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법률조직 정비와 자체 소송 수행 역량을 강화할 것

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NKIS에 등록되지 않은 60% 정도의 연구과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보고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대외활동(사례금 상한액 및 상한시간) 관련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관리 실패 및 연구공공성 훼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수의계약 관련 내부규정 또는 해석기준을 정비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고용 실태 점검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NKIS 등록 현황을 점검할 것
- 연구기관의 공공성지표 점검·관리하고, 국가전략과제 등의 협력연구를 촉진하며,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연구 성과 의원실에 보고할 것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PBS 제도 개편 관련 모니터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성과급 차등 지급 관련 감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자의 인센티브 제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협동연구 예산 확보를 통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 참여율 저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청년·노인 정책 연구 균형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와 기관장 선출과정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평가 관련, 3년 주기 평가체계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 지출 인정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계약제 폐지 및 시용제도 최소화를 통한 연구현장 고용 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의 과도한 노무비용 지출을 지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해외사무소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점검할 것

[국토연구원]

- 전세사기대응 관련 주거정책연구센터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연구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미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경제연구소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연구원]

-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보다 완화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을 시정할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도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

[통일연구원]

- 기관장의 정치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항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할 것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결과 철도분야가 통과율 및 경제성이 저조한 상황으로 예비타당성제도를 점검하고, 정시성, 환경성 등의 편익 및 미래수요 등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종합적인 팩트를 반영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사업운영원 대우 170명 등 장기·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운영과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골프 접대 관련, 수능 출제합숙소 계약 전반 전수조사 및 내부 감사체계 및 징계규정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교과서 부실 검증 등 202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지연 사유 및 교육부와 평가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교통연구원]

- 한강리버버스가 정시성과 편의성 등을 갖춘 정상적인 교통수단이 될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실내온도와 노동생산성 관련 연구를 검토할 것
-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요건보다 완화된 계약 관련 내부규정을 시정할 것
- 퇴직자단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은 계약의 공공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므로 주의할 것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내부 직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